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명확화 방안

연구진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 연구위원)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 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에 대한 논의	7
제1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의 개념	9
제2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의 분류 및 사례분석 ...	10
제3절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규제의 현황 분석	16
제4절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규제의 이행상 문제점 분석	21
제3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 사례분석	33
제1절 지자체의 규제법제 개선 사례분석	35
제2절 서울시의 규제개선 사례분석	39
제3절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개선 사례분석	49
제4장 인·허가 관련규제의 외국사례	55
제1절 OECD 국가의 규제개혁 노력	57
제2절 주요 국가별 규제개혁 사례	62



제5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유권해석 명확화 방안 ..	67
제1절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규제사무 표준화 방안	69
제2절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인·허가 규제사무 개선방안	88
제3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117
제6장 결론: 정책 제언	123
참고문헌	134



표 차례

<표 2-1> 기업·상공인 관련 주요 법률 및 위원회	17
<표 2-2> 주요 인·허가 관련규제	18
<표 3-1>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규제정비 사례	36
<표 5-1> 기초자치단체별·유형별 등록규제사무 (2013년 9월 현재)	70
<표 5-2> 기준규제 사무 분류표	71
<표 5-3> 자치단체의 규제사무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분표 ..	72
<표 5-4>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유형 구분	88
<표 5-5> 규제개혁 간소화 유형표	119

그림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4-1> OECD 국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현황 (22개국 설문 응답)	61
<그림 5-1>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 절차	95
<그림 5-2> 개선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절차	95
<그림 5-3> 개선 전과 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비교	98
<그림 5-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101
<그림 5-5> 사전환경성검토 규제 절차	107
<그림 5-6>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107
<그림 5-7> 규제개혁 간소화 단계	122
<그림 6-1> 시민참여에 의한 규제개선 점검·평가 체계도 ...	131
<그림 6-2> 규제등록관리 및 심사 체계도(안)	13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추진 배경

- 인·허가는 행정규제의 유형 중의 하나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을 기준으로 행정규제 사무를 인·허가, 지도·단속 등 유형별로 분류
- 이 중에서 인·허가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인허가 처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주요한 규제내용으로는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지점용허가, 식품위생허가, 자동차등록 등을 들 수 있음
- 그렇지만 인허가 규제의 유형을 개별 항목별로 보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내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보고를 가진 바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또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선장관회의 보고 등에서 법령 집행상 일선 담당자가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의 지연행위 등 행태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이후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
신 바 있음
- 잘못된 법령 해석 및 동일한 법령,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다르고 법규 적용을 달리함에 따라서 과도한 행위 제한 등의 발
생하여 규제로 작용하게 됨
 - 그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여 기업부담으로 작용
하여 일부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사
례들이 있다는 지적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업무에서 유권해석이 명확하
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상황, 타당성 결여 등 제한적 규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부담 해소 및 적극적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행태 명확화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함

제2절 연구의 내용

-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명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 현황 분석
-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 행태 개선 필요 사례 발굴
- 지자체간 동일한 법령·자치법규에 대해 자치단체마다 해석이 상이함으로
인한 기업부담 사례 발굴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에 관한 현황 분석
 - － 현행 인·허가 및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재검토
 - － 인·허가 및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에 근거한 기존 규제업무 중심의 사례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인·허가 규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시군구간 사례 비교분석
 - －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와 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 개최로 정제된 개선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운영사례에 관한 기존자료 및 문헌분석
 - － 우리나라 시도·시군구의 인·허가 관련 업무의 규제현황 분석
 -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 규제운영 실태분석 등에 관한 기존문헌, 연구자료 검토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제업무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인·허가 업무에 대한 표준규제사무를 선별하여 정리함으로써 인·허가에 관한 유권해석을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도록 함
- 지자체 자치법규상 규제 및 행태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정리 및 개선안 도출
 - － (발굴대상) 비법정 규제, 주민반발 등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법령해석 오류, 법령사항의 자치법규 미반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규제사례 분석
 - － 규제이행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지방규제 및 지방공무원 행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있음
 - －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여, 조사결과에 근거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규제 및 행태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제2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에 대한 논의

제1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개념

제2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의 분류 및 사례분석

제3절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규제의 현황 분석

제4절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규제의 이행상 문제점 분석

제2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에
대한 논의

제1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의 개념

- 인허가는 행정규제의 유형 중의 하나임
 - 행정규제는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인 인·허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동(면제, 말소 등의 결정),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기관 및 국민의 의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이 존재함
 - 이 중에서 인허가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인허가 처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을 기준으로 행정규제 사무를 인·허가, 지도·단속 등 유형별로 분류
- 유형 및 세부유형에서 유형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세부유형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낙),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 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유형	세부유형
○ 1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낙),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 2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유 형	세 부 유 형
○ 3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 4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미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제2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의 분류 및 사례분석

1. 지자체 인·허가 유형 분류 및 사례

○ 허가

- 법령(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도로상에서 자유롭게 운전)가 제한(금지)되고 있는 경우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운전면허)로 법령상 허가, 면허, 특허, 처분 등으로 불리기도 함

예) 음식점 영업허가, 건축허가, 카지노업허가, 의사면허, 단란주점 영업허가 등

○ 허가 등록규제

-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도로 점용허가)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위탁, 사용·수익허가)

- 여주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2항
-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보육서비스) 제2항 및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6조(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제한)

○ 인가

-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임원선임행위)를 동의(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승인)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예)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 인정(인증, 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 제2항

○ 특허

-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실정법상으로 면허·허가 등으로 불림
예)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허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허 가	특 허
제도의 예	단란주점영업허가	버스운송사업면허
제도의 목적	경찰목적(소극적 위협방지)	복리목적(적극적 복지증진)
행위의 요건	비교적 확정적	비교적 불확정적
국가의 감독	소극적	적극적

○ 면허

- 평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조(신규면허)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제2조(면허의 기본 자격)
- 진주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5조(면허발급)

○ 승인(승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징물조례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 부산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승인)
-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항
-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제2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관리청 외의 자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 양주시 보육 조례 제18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제3항

○ 지정

-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10조(판매인 지정신청) 제1항
-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지정 등)
- 남원시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 담양군 건축 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등)
-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봉투판매인의 지정)
- 영광군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지정대상)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 포항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인·허가 유사규제의 유형 및 사례

- 투자저해적 규제
 - 관광시설의 회원모집 제한 규제 (관광진흥법 제20조)
 - 문제점: 관광사업(예: 유원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제한하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음
-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
 -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주택법시행령)
 - 문제점: 서민생계형 음식점인 김밥집 등 분식집 운영자 등에까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함
 -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도시철도법 시행령)
 - 문제점: 도시철도 건설 수혜자가 아닌 식품영업허가자 등에게도 채권매입을 강제하고 있음
-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소득기반 확충을 지연시키는 규제
 - 농지보전부담금 규제 (농지법시행령)
 - 문제점: 농촌지역에서 레저형 산업 등 개발시, 농업인은 농지 매각대금만 수취하고 개발이익은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함. 즉,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가 없어 농업인의 소득창출 등에 한계가 있음
 -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정제’ (농어촌정비법)
 - 문제점: 농어촌 민박사업 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지정을 받아야 함 (사전적 요건 심사 등에 7일 소요)
 - 축사의 소방시설 설치의무 규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령)
 - 문제점: 축사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개방형 축사의 경우 소화기, 비상방송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함

* 축사 관련 점진적 완화 조치 시행중, 일부 기준 현실 반영 미흡

- 전수조사방식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 문제점: 자동차의 상태나 신기술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배출가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시행규칙)
- 문제점: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주로 타는 ‘특정경유자동차’(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끝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통합된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배출가스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정리: 인·허가 유사규제의 개선방향

인·허가 유사규제의 유형	문제가 되는 규제내용	규제사례	규제개선 방향
비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낮은 저품질 불량규제	비현실적인 규제업무로서 준수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한 규제	일용직에 대한 8시간 안 전교육 시간의 획일적 적용	형식적 규정의 폐지 또는 효과 지향적 자율화 추진
	비현실적인 규제업무로서 준수가능성이 낮거나 규제대상인 국민에게 과중한 비용부담 등을 발생시키는 비합리적 규제	신선편의식품의 주1회 자가식품검사	업무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간소화
	내용이 모호해서 무리한 확대 해석을 초래하는 규제	‘체지방분석기’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의료법제25조제1항)	모호하거나 너무 넓게 규제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범위가 많은 부분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대상과 범위는 분명하게 축소, 제한하여 규정
	민간의 투자를 제약하거나 저해하는 규제	‘관광시설의 회원모집 제한 규제’ (관광진흥법 제20조)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규제의 역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규제개혁이 가능한 보완적 조치를 신속히 조치

인·허가 유사규제의 유형	문제가 되는 규제내용	규제사례	규제개선 방향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부담을 민간분야에 전가하는 규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사업 관리’	규제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절한 책임 배분 등을 명문화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제시함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서민생계형 대상자에게 과도한 의무규정을 부과하는 규제	식품영업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주택법 시행령)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고, 정책적으로 규제일몰제를 매년 또는 매2년마다 시행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도시철도법 시행령)	법률이 아닌 시행령상의 과도한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폐지 또는 축소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을 제한하는 규제(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규제제한을 풀어서 서민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민원처리의 간소화 절차를 상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조건의 제한적 규제 (근로자복지운영규정)	안정적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조건완화 등 규제완화, 규제범위 확대 등의 조치
유사·중복 규제	위생교육 등의 중복적 의무행 (식품위생법)	유사 중복적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통합합을 유도하여 간소화	
농어민 경제 활동 지원 및 소득기반 확충을 지연시키는 규제	개발제한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농어촌민들의 소득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규제 (농지법시행령)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매2~4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규제영향 분석을 사전 및 사후로 철저히 평가하여 보조금 등 지원
축사의 소방시설 설치의 무 규제			

제3절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규제의 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 유형
 - 종래 처리주체에 의한 유형분류, 처리목적에 의한 유형분류 등을 시도 하여 왔음
 - 그러나 유형간 차별화 부족,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현재 처리절차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부서)의 수준에 따른 유형화가 일반적임

유 형	세 부 유 형
제1유형	동일기관 내 부서 간에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제2유형	감독관계에 있는 상·하기관 간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제3유형	타 행정기관(단체·협회 등 포함) 상호 간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제4유형	기관내부 상·하기관 타 행정기관 간에 혼합적으로 관련된 인허가 규제업무

- 인·허가 관련규제의 주요 법률
 - 인허가는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허가 규제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규제사항은 주로 국토부와 관련이 많음
 - 기업의 개별 입지와 관련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존재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되며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이 있음

〈표 2-1〉 기업·상공인 관련 주요 법률 및 위원회

근거법령 (소관부처)	의무적 설치 대상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할 위원회
	시·도(16개)	시·군·구 (228개)	
2013년 기준	9종(144개)	4종(912개)	10종(1056개)
건축법 (국토부)	○	○	건축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토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국토부)	○	○	도시계획위원회
주택법 (국토부)		○	분양가심사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안전행정부)	○	○	옥외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문화관광부)	○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 례법 (국토부)	○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물류시설의개발 및운영에관한법률 (국토부)	○		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중기청)	○		시장정비사업심의 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국토부)	○		물류정책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허가 규제와 관련부서

- 인허가 규제의 유형을 개별 항목별로 보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내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 지자체의 주요한 규제내용으로는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지점용허가, 식품위생허가, 자동차등록 등을 들 수 있음

<표 2-2> 주요 인·허가 관련규제

주민원 (주무부서)	관련 규제 (관련부서·기관)
전통사찰경내 공원점용등 허가(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지역점용 및 사용허가(건설과) - 도시공원점용허가(건설과) -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허가(도시건축과) - 보전임지 전용허가(건설과)
공연장설치허가(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표시·설치허가 (건설과 경관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건설행정)
토지분할신청(민원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분할허가(도시건축과)
식품영업허가신청(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산업경제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해제신청(교육청)
식품영업 허가사항변경(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산업경제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해제신청(교육청)
모지설치허가(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하 산림훼손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초지전용허가(산업과) - 산림형질변경허가(건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산림형질변경허가(건설과) - 배수설비설치신고(상하수과)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의례식장 등 영업신고(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창고업등록신청(산업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폐수시설설치허가(환경위생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석유판매업허가(산업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설치허가(환경위생과) - 위험물제조시설 설치허가(소방서)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석유판매업신고(산업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소방서)
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 (산업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기술검토의뢰(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판매허가 (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통보(소방서) - 기술검토의뢰(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저장·판매허가 (재난관리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통보(소방서) - 기술검토회의(한국가스안전공사)
입목벌채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산림형질변경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자동차등록(민원봉사과)	- 등록세납부(세무과) - 각종채권매입(시금고) - 자동차책임보험(보험회사)

주민원 (주무부서)	관련 규제 (관련부서·기관)
------------	-----------------

사도개설허가(건설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입목벌채허가(건설과) - 사방지지정해제(건설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물건적지허가(도시건축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산업경제과)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공작물의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 배수시설 설치신고(상하수과)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신고(환경위생과)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도시건축과) - 산림훼손허가(건설과) - 사도개설허가(건설과)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접도구역내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건설과) - 하천점용등의 허가(상하수과) - 시설등의 용도변경신고(도시건축과) - 상수도공급신청(상하수과) - 소방설비공사의 신고(소방서) - 공동주택개축등 행위허가(도청) - 공원점용 및 사용(건설과) - 소방설비 설치협의(소방서)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신고(문화체육과) - 공중위생시설의 설치(환경위생과) -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설치협의(환경위생과) - 시장시설 설치협의(산업경제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협의(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구역내 협의(문화체육과)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협의(군부대) - 철도시설관련협의(지방철도청) - 항공장애사항 관련협의(지방항공관리국)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도시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정화시설/정화조준공검사(환경위생과)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준공검사(전화국) -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신청(민원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설비의 설치(상하수과) - 소방설비공사 준공검사(소방서)
증축등 심고서 및 신고필증(도시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공작물의 축조신고(도시건축과) - 배수시설의 설치신고(상하수과)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신고(환경위생과)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도시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화조설치신고(환경위생과) -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교육청) - 위험물취급시설 변경신청(소방서)
도로변(시·군도)휴게소설치허가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 산림훼손허가(건설과) - 건축허가(도시건축과)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 초지점용허가(산업경제과) - 석유판매업허가(산업경제과) - 식품영업허가(환경위생과) - 사도개설허가(건설과)

주민원 (주무부서)	관련 규제 (관련부서·기관)
------------	-----------------

하천부속물 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 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유수의 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하천부속물 점용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제거허가(상하수과 하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토지의 점용허가(상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 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 식물의 재식허가(상하수과 상하수행정)

지하수채취 및 주수허가(상하수과)	- 수질오염여부심사(환경위생과) - 상수도수원지 수질오염여부심사(상하수과)
의료기관개설허가(보건소)	- 건축물 용도확인 및 심의(도시건축과)
의약품도매상허가(보건소)	- 고압가스판매업허가(산업경제과)
주민등록전입신고(동)	- 향토예비군 거주지이동신고(동) - 민방위대 거주지이동신고(동) - 생활보호대상자 거주지이동신고(동) - 장애인 거주지이동신고(동) - 학력아동 전출입신고(동) - 병역의무자 거주지이동신고(동) - 인감대상자 거주지이동신고(동) - 국가유공자 거주지변경신고 -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변경신고 - 자동차 주소지변경신고(동) - 지역의료보험 탈퇴, 가입신고(동) - 이륜차소유자 주소지변경신고(동) - 주거용상하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고(동) - 일주택 수가구 거주수용 요금적용신청(한전)

제4절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규제의 이행상 문제점 분석

1. 규제업무 행정조직의 문제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담당 인력부족 및 전문성 미흡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개혁 전담체계의 미비로 담당자 한 명이 규제관련 업무를 전담하거나 다른 업무와 전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임
 - 공무원들이 규제업무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식하여 규제부서 배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보직 교체로 담당 인력이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어려움
 -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안건 검토 등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쳐 규제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규제업무 담당 조직의 분산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보 공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파주시의 ‘인·허가부서 통합운영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 즉,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실무자에게 처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한 사례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심사기구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16개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의 경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14/16개)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있어 형식적인 요건은 대체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평균 3.2회로 나타나 회의 운영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자치법규 심사 위주에만 국한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례] 자체의 규제심사절차 형식적 운영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의 누락 사례 : △△시의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법령에 대한 조례안” 등 신설·강화규제가 포함된 다수의 자치법규를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정·개정함

○ 행정규제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결여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속성상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어 있음.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를 뒷받침할만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이나 행정규제 관련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안산시의 ‘24시간 민원센터’의 경우를 보면, 정규 근무시간 내에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국가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홈페이지 점검 결과, 모든 지자체가 홈페이지 상에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코너를 개설하여 규제등록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자료 업데이트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규제개혁’ 코너를 몇 단계에 걸쳐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2. 규제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 규제집행상 불명확성 존재

-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유형은 명확성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들임. 이러한 규제들은 규제집행상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불신감과 낮은 순응도를 초래함
- 즉, 이러한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문제 발생은 물론, 중앙의 해당부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빈번한 유권해석 의뢰, 그리고 해당 부처의 불명확한 해석 등 질의와 회신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시

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사례] 규정의 구체성 결여

- △△시의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는 입주자격 기준에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법규 적용에 있어서 객관성·투명성 확보가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특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중에는 상위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일탈규제 등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는 것임

[사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연

- ‘04.2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새로 제정·공포되었으나, 13.11월 현재 종전 법률에 의한 「△△도 순환수렵장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후속조치 지연

[사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치법규의 규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2에는 분뇨등 처리업,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에는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해 “당해 관할구역 내에 주소 및 본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구역을 제한

[사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일탈규제

- 소비자보호법(제52조) 및 동 법에 근거한 「△△도 소비자보호조례」에는 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계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세부 운영 규정에는 “사업자” 이외에 “소비자”에게도 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법 제15조 등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의 수리시,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사용 승낙서”나 “합의각서” 등의 서류를 향후 분쟁방지 등을 이유로 징구하는 경우가 있음

[사례] 지방자치단체 내부규정(훈령)으로 규제사항을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는 법률 등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규칙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훈령인 「△△도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서 관계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 등 규제 사항을 규정

[사례] 폐지·개선된 규제사항에 대한 종전규정의 적용 집행

- 종전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등록시, 사업자의 이력서, 자산상황서, 사무실 위치도, 직업상담원 이력서 제출 등을 규정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종전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모두 접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행정편의주의, 감사 의식, 집단민원의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를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음
- 확인, 증명의 책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법률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보상은 없고 오히려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여전함

3. 규제 정비시 발생하는 문제

○ 상위법상 휴·폐지된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문제

- 예를 들면, 석유사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휴·폐지 신고사항이 폐지된 이후에도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처리하면서 휴·폐지 신고의무를 준수토록 통보하는 경우
- 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정기간행물의 휴·폐간 신고제가 폐지되었으나 종전과 같이 신고서 접수 처리가 지속됨

○ 법령미근거 규제의 지속적인 적용의 근절 어려움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료성분등록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사료수입 및 판매실적을 매월 5일까지 보고토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등의 규정을 통보
- 건축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규정에 없는 사무실평면도, 배치도, 기자재·비품보유증명서등을 징구하여 처리한 사례 등

○ ‘규제등록상’ 문제

- 자치단체의 규제등록상 문제점의 원인은 자치단체 실무 담당자들에게 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규제등록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있다고 판단됨. 2014년 8월 상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방향이 제시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음

- 즉, 현재의 규제등록방식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00년에 작성한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실무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이들 중 규제라고 판단되는 규정들을 등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러므로 규제등록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특정 조항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규제등록을 위해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을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처럼, 현재의 규제 판단기준에 근거해서 조례나 규칙의 특정조항이 규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
- 즉, 규제개혁위원회가 작성한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 중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행정규제로 분류해서는 안되는 예외적인 규정들을 선별해 내는 기준에 대한 것들임
- 이 규제판단 기준은 부분적인 원칙이나 기준은 수립되어 있으나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원칙이나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못함
- 그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도 많음.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이 기준에 의거해 특정 자치법규의 규제 판단 여부를 내리기에는 문제점이 많음
- 실제 자치단체 실무자들 간에도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 상이한 규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심지어는 연구진들 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규정의 규제판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자치단체 규제등록상의 문제점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규제등록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규제를 등록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규정 중 규제(조항)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법규정을 일반 법규정과 달리 ‘규제(조항)’라는 명칭을 붙여 등록하는 것임

- 즉, 규제등록의 목적은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규제를 관리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규제를 강화, 완화, 폐지하는 등의 규제 정비를 목적으로 함. 따라서 규제를 등록하는 목적은 특정 규제(조항)를 강화, 완화,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정비의 여지가 없는 법규정은 비록 규제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 ‘규제 내용상’의 문제

-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이라 함은 본래 의미의 규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의미함
- 규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폐지’를 두 가지 의미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 하나는 현행 자치법규의 특정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와,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제등록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이 혼동의 문제는 기존연구에서 ‘규제의 등록 제외’란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상용하여 해결하였으며, 현재 자치법규에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의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치’란 용어의 의미는 ‘규제로서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와 ‘규제 등록은 불필요하지만 법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음
- 그리고 현행 규제등록상의 문제는 자치법규의 특정 조항을 규제로 등록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조항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에서 기인함. 규제를 등록하는 근본 목적이 이를 정비하는데 있다면, 향후 규제등록은 특정 조항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항의 규제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공무원의 행태 및 의식의 근본적 문제

-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의 하나는 능장행정으로 인한 민원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요구, 관련 법령의 잘못된 해석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행태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은 곧 바로 국가 전체 규제개혁 체감도와도 직결되고 있음

4. 인·허가 관련규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문제점

○ 인허가 관련규제 업무의 처리절차

- 인허가 규제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는 각각의 개별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처리과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① 제1유형

- 인허가 규제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
- 처리과정은 첫째, 민원인이 인허가 업무를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실에서는 이를 민원접수 처리부에 등재하고 주무 처리부서를 지정함
- 둘째, 주무처리 하는 해당 실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의 규제업무와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함
- 셋째, 주무처리부서는 인·허가 결과를 민원실로 통보하고, 민원실은 이 사항을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함

② 제2유형

-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허가 규제업무의 접수, 적법요건의 검토, 관련부서 간 협의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제2유형임

③ 인허가 규제업무의 전체 처리과정

- 전반적인 처리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데, 이는 간단히 민원의 접수, (규제 검토 등) 유관기관협의, 민원인에 대한 통지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민원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의 인허가 규제업무 접수, 주무부서 선정 등
- 유관기관협이는 인·허가의 적법성(규제내용)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관계부서 내지 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다시 내부부서와의 협의과정과 외부기관과의 협의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통지는 검토된 규제사항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단계로 처리기한의 문제, 전달방법상의 문제 등을 포함함
- 이외 기타사항에서는 인허가 규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사기제고방안, 업무량조정문제, 전산화 미비 등을 다룸

○ 인허가 관련규제의 문제점

- 내부 부서간 협의는 외부 기관간 협의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처리과정이 무난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간 부서이기주의 및 협의시간의 부족, 책임회피성 접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과정의 지연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현장 등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공고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민원처리기한의 단축은 업무절차의 효율화를 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짐
-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과 유리된 처리기한 의무화로 인하여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무리한 처리 기한 의무 도입의 경우 책임회피가 많이 발생

- 인허가 민원에 대한 협의·검토과정의 부실화는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상당수 인허가 민원의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인허가 처리의 지연요인으로 작동
- 예를 들어 건축허가에서 관련 민원인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배수설비 등은 현장확인 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민원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 당사자들에게도 업무량 과부하에 따른 피로누적 및 사기저하, 민원부서 기피 등 내부조직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게 됨



제3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 사례분석

제1절 지자체의 규제법제 개선 사례분석

제2절 서울시의 규제개선 사례분석

제3절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개선 사례분석

제3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 사례분석

제1절 지자체의 규제법제 개선 사례분석

1. 조례 및 규칙의 정비(개정, 행정처리 절차의 수정)

- 혜택에 대한 중복수혜 절차의 완화
 -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근거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이미 용자를 받은 기업은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용자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 갈등 발생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행정처리 절차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
 - 수도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한 수도조례 제5조에서 수도의 前소유자의 체납된 수도요금을 新소유자가 부담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분쟁해소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립병원의 입원치료환자에 대한 입원 및 수술보증금 선납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수가를 체납하거나 진료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강제퇴원 하록하는 규정을 환자의 치료경과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 운영조례 개정
-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주차장법 제15조에 근거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주차대수의 10대미만 또는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한 규정을 폐지
 - 건축법 제45조에 근거한 건축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내는 오피스텔 건

축을 제한 하던 규정을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여 지역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

2.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폐지, 기간단축 등에 의한 규제정비

○ 처리절차 간소화 등 추진경과

- 과거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행정기관(38개) 소관 민원사무를 多數 조사하여 민원사무폐지, 구비서류 감축, 기간단축, 수수료 인하 등 총 1,013종의 민원사무를 개선·정비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고시한 바 있음¹⁾
- 이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하여 16개 부처 56종의 민원을 폐지하고, 4개 부처 11종의 민원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하였던 것임

<표 3-1>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규제정비 사례

(단위 : 종)

계	규 제 완 화					수 수 료		신 청 방 법 개 선	위 입 위 탁
	소 계	민 원 사 무 폐 지	구 비 서 류 감 축	처 리 기 간 단 축	규 제 수 준 완 화	인 하	증 액		
1,013	605	56	518	20	11	13	17	310	68

○ 민원사무 정비사례

- 폐지 : 도시계획법상 공작물설치허가, 공연법상 공연허가, 은행법상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초과 취득신고 등
- 완화 : 체인사업 휴폐업신고(종전 승인 → 신고) 등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접수 방법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근거 :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으로, 일선기관 민원사무처리의 일차적 기준이 된다.

- 감축 :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등 증명서류를 감축하여 29개 부처 518종의 민원구비서류를 감축.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호적등본 제출생략, 거주여권본 실재발급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등
- 처리기간 단축 및 개선 : 전자정부의 활발한 추진으로 11개 부처 20종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11개 부처 310종의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을 개선. 예를 들면, 의료급여대상자증명신청(종전 10일 → 즉시), 회계법인의 등록(종전 20일→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인터넷 신청가능) 등
- 위임 및 위탁 : 이밖에도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업무가 시·도로 위임되는 등 10개 부처 68건의 민원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한 경우가 대부분임 : 10개 부처 68종
 - ※ 주민등록이의신청(안전행정부) : 시·군·구⇒읍·면·동, 지방문화원설립인가(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 시·도, 고압가스허가신청(산업자원부) : 시·도 ⇒ 시·군·구,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환경청) : 유역환경청 ⇒ 시·도

3.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통한 정비

- 투자유치에 따른 인·허가 기간 단축
 - 경상북도 영주시 사례 : 영주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포함한 종합레저시설 유치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서 투자유치의 효과성을 배가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
- 추진내용
 - 2007. 3. 20 : 종합리조트사업 투자의향서 접수
 - 2007. 5. 4 : 투자양해각서 체결
 - 2007. 5. 11 : 투자협정서 체결
 - [영주시⇔이앤씨티엠에스(주)·이앤씨건설(주)]
 - 2007. 6. 11 : 개발촉진지구 변경(안) 및 개발계획(안)승인요청

- 2007. 7. 12 :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 중앙관계 부처 협의 (국토해양부→환경부등 9개 부처)
- 2007. 8. 27 :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승인(건설교통부)
- 2007. 8. 28 : 산악휴양형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경상북도)
- 2007. 9. 6 : 아지동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주시)
- 2007. 9. 14 : 건축허가
- 2007. 10. 19 : 기공식
- 2008. 3. 13 : 투자유치 우수사례로 선정, 기초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와대 직접 보고 (행정절차 단축 : 330일→118일)

○ 인허가기간 단축 내용 :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구분 (절차별)	처 리 사 항	소요기간(일)		기간단축을 위한 활동상황
		통 상	금 회	
합 계		330	118	
사업제안('07.05.01) ↓ 시 검토 및 도 제출 ('07.06.11)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여부 결정 및 입안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서 작성	<140> 60일 30일 20일 10일 10일 10일	<41> 41일	·5회에 걸친 정책회의 개최로 부서 및 관계기관 간 협의 조정 보완 ·의회설명회 및 보고회 5회 개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절계 승인 사전 검토 및 협의 ·처리 절차별 협의 가능한 다음절차 사전 협의 ·환경청 방문 사전협의 ·건축 및 농지 전용 등 사전 검토 협의
도 검토 및 국토해양부 제출('07.06.29)	·도 검토(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	<100> 90일 10일	<18> 18일	·국토해양부 사전방문 협의 ·도청 관계부서장 협의 설명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 방문 업무 협의
국토해양부 검토, 중앙 부처 협의 및 승인 ('07.08,27)	·중앙부처 협의 및 국토 해양부 검토, 승인	90일	59일	·중앙부처 협의 부처별 담당공무원 지정, 업무 협의 및 미비사항 사전 파악 보완

○ 추진성과

-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처리기간 단축 (212일 단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330일 정도 소요 ⇒ 아지동 종합레저타운 개발계획 지구지정은 118일 소요
- '07년도 경북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상 수상
- '08년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시 우수사례 보고

제2절 서울시의 규제개선 사례분석

1. 규제 내용의 명확화 및 구체화

(사례 1) 도매시장 감독 조치 사유 명확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제76조)

○ 현황

- 현재 도매시장의 업무처리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문제점

- 도매시장의 감독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함

○ 개선조치

- “건전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국무조정실의 권고를 수용하여, 동 시행규칙 제76조의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례 2) 시립묘지 등 위탁취소 사유 명확화(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 20조)

○ 현황 및 문제점

- 시립묘지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모호성으로 자의적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음

제20조(위탁의 취소 등)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조치

- 국무조정실에서는 ‘수탁자의 운영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공익상의 위탁 운영이 부적당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조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심사 결과 ‘장사등에관한조례’ 제20조 2호와 3호를 삭제함

2.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사례 3) 가로수 훼손예치금의 폐지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현황

-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손괴시, 훼손자부담금과 원상복구시 예치금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19조(훼손자부담금) ①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①구청장은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이식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 예치금(수목비+식재비)을 2년간 예치하고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경우에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원상복구로 훼손에 따른 책임을 다한 상황에서 상당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부담이며, 또한 2년 후 훼손자의 반환신청시 예치금을 반환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 초래함

○ 개선조치

- 국무조정실에서는 ‘예치금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인 조경과의 의견을 수용하여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은 현행 유지하되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가로수를

이식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는 삭제함

(사례 4) 운행제한장치 해제 요청 절차의 폐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의 2 제2항)

- 현황
 -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이 제반비용을 납부하고, 차량 운행 제한장치 해체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제반비용을 납부한 행위 자체를 해제 요청으로 볼 수 있음에도, 다시 해제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시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시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개선조치
 - 국무조정실의 해제 요청 규제 폐지 권고에 따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의2 제2항의 “시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3. 과도한 규제의 완화

(사례 5)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 이자 개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4조, 하천법시행령 제41조)

○ 현황

- 1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 등을 4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임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관리청은 1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 등을 4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 문제점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가 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이자율이 높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개선조치

- 국무조정실이 분할 납부 이자율(연 4~8%)의 적정한 부담기준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8년 계획되어 있는 하천법령 개정시 분할 납부 이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함

(사례 6) 도매시장 매매참가자 일정 복장 착용 규제 완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64조)

○ 현황 및 실태

- 현재 도매시장 매매 참가자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거래참가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문제점

-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등에게 복장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제6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6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 개선조치

- 국무조정실에서는 ‘거래참가증’만으로 거래관계자의 표지가 가능하므로 복장에 대한 규제는 폐지토록 권고했으나, 시의 최종심의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일정한 복장을 착용”을 “일정한 모자를 착용” 등으로 완화함

(사례 7) 자동차폐차업 등록기준 완화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제6조)

○ 현황

- 자동차폐차업 등록기준 중,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6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폐차업(법 제2조제9호)의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이하 "폐차업" 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추었.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문제점

-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중 ‘대형차량의 출입 여부’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가 판단할 입지문제이므로 정부가 관

여할 필요성이 낮고, ‘배수가 용이하며’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함

○ 개선조치

- 국무조정실에서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한” 입지요건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시에서 이를 수용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제6조 2호를 삭제함

4. 행정절차의 합리화

(사례 8) 시립미술관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서울특별시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

○ 현황

- 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시립미술관에 대한 대관 신청시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명시하고 있음

제7조(대관허가 절차)①생략 ②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희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 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 경비 조달방법, 신청단체의 전시회 경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시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문제점

- 이러한 첨부 서류 중, ‘경비 조달방법,’ ‘신청단체의 전시회 경력’에 관한 서류는 사실상 대관 허가와 관련이 적은 내용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과도한 자료 요구임

○ 개선조치

- 시립미술관의 대관 신청 승인 여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즉, 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신청단체의 전시회 경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아울러 전시기본 계획서에 포함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관신청 승인여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첨부토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사례 10) 수도 정수해제 수수료 징구조항 폐지(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31조 제2항)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조례 제31조 “정수처분”제2항에서 정수처분 해제시 1전 1회에 3,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수처분 해제시 해제수수료를 별도로 징구하는 것은 이중적 부담임

제31조(정수처분)

-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11. 생략
-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 1회에 3,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 개선조치

- 국무조정실의 검토 의견은 이중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수료의 징수 규제를 폐지하는 것임. 그러나, 심사 결과 관련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5. 필요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사례 11) 비포장 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금지 및 영업 제한 신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 내에서 배추, 무 등 채소쓰레기의 다량 발생은 심한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도매시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다듬기·청소비 등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포장 산물 형태의 출하는 농산물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의한 물류체계 개선을 저해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 제20조(개설자의 의무)에 의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환경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 동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에 의거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개선조치

- 쓰레기를 유발하는 비포장품을 출하·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반입금지, 영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설함. 즉, 자율적인 시범사업 등을 통한 미온적인 시행방법 보다는 법규적 제도 정비를 통한 강제적 의무이행의 수단 확보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에 ‘비포장품에 대한 반입금지 및 영업제한 규정’을 신설함
- 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등을 출하·유통시키고 있는 관계인들에게는 포장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중도매인’의 경우 선별·다듬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작업비 등 부대비용 증가에 따라 포장출하를 희망하며, ‘출하자’의 경우는 김치공장, 대형점 등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장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다만 포장출하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쓰레기 감소에 따른 시장 환경개선 및 매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포장화를 선호하고 있음

(사례 13) 도매시장 시설물 무단 점유·사용 제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
시장 조례 제11조)

○ 현황

-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11조(시설사용의 규제)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
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개정 1999.06.30)
2. 불공정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유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개정 1999.06.30)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개정 1999.06.30, 2008.07.30)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 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개정 1999.06.30)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개정 1999.06.30)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개정 1999.06.30)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8.07.30)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신설 2008.07.30)

○ 문제점

-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다수의 출하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따라서 당초 허용한 시설물의 사용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수의 시장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 또한 시설물 사용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전문적 기술 검토 등 개설자의 승인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

- 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가 곤란하며 전기 누전, 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음
- 근거법인 농안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²⁾이 다소 불명확한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 개선조치

- 시설 사용자 규제 대상에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추가함
- ⑦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⑧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제3절 |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개선 사례분석

- 안전행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 및 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하였음(2011년 6월)
- 당시 177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12), 부산(16), 대구(8), 인천(8), 광주(5), 대전(2), 울산(3), 경기(24), 강원(6), 충북(6), 충남(13), 전북(14), 전남(19), 경북(23), 경남(18)

2) 농안법 제74조 제1항 :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합의 내용

- ① 제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 : 경기 등 13개 광역 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 100개의 제 증명 수수료 조례
 ⇒ 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각종 증명(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요청시 납부한 수수료(1천원 ~ 10만원)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신청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

(사례)

조례명	기존	개선
제 증명 수수료 조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하도록 개선

- ②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을 개선 : 부산 등 14개 광역 시·도 소재 67개 기초자치단체 81개의 교육시설 운영관련 조례
 ⇒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

(사례)

조례명	기존	개선
교육시설 운영조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등)	강좌개시일 3~5일전 취소 →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강좌개시일 전일 취소 → 전액 반환
	강좌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 월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 월분만 반환	강좌개시일 이후 취소 →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 잔여 월분을 합산하여 반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는 당해 월 총 교습시간이 1/3 경과하기 전에는 2/3 반환, 1/2경과 전에는 1/2반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 ③ 공공시설 사용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을 개선 : 경남 등 15개 광역시·도 소재 102개 기초 자치단체 189개의 공공시설 운영조례
 ⇒ 각종 공공시설 사용 중단 시 환불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사례)

규제명	기준	개선
공공시설 운영조례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	사용개시 3일전 취소 → 50% 반환	사용개시 이전 취소 → 취소요청 일자에 따라 반환범위를 구체화
	사용개시 이후 취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용료 미반환	사용개시 이후 취소 →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하고 스포츠센터 같은 체육시설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함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중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토록 규정
- ④ 타 지역업체 참여 진입제한(거주지 요건 설정 등) 폐지 : 인천 등 9개 광역시·도 소재 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견인대행 및 분노처리 관련 26개 조례
 ⇒ 견인대행업과 분노처리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
- ⑤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 개선 : 경기 등 5개도 소재 17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타 지역 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개선 또는 폐지

(사례)

조례명	기준	개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시장, 군수의 책무)	지역 건설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삭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 파악으로 수정

- ⑥ 특정자재에 대한 차별취급 폐지 : 전북 등 8개 광역시·도 소재 55개 기초
자치단체 55개 수도급수 조례
⇒ 수도급수 공사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
여 시공자에게 자재선택권 부여(자치단체는 품질기준만 제시)
- ⑦ 공공시설의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 : 부
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68개 기초자치단체의 162개 공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공공시설(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할
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것을 구체
적으로 적시토록 개선
- ⑧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 광주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80
개 기초자치단체 80개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입찰 방식 도입

(사례)

조례명	기준	개선
주차장 조례	지방공기업에 우선배정, 비영리법인에게는 수의계약, 사법인과 개인의 경우 경쟁입찰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관리수탁자 선정

- ⑨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규정 폐지 : 충북 등 5개도 소재 20개 기초자치단체 건축조례 20개 조례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폐지

2. 기대 효과

- ①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행정의 조례·규칙의 비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1차적인 복리공급 기관인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730개 조례·규칙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인 소비자 이익침해와 진입제한 행위 등을 개선함으로써 조례·규칙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
- ②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수강, 공공시설사용 및 제 증명 신청시 발생하는 환불규정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
- ③ 견인대행업과 분노처리업의 진입제한 해소, 수도급수 공사시 자재선택권 허용, 지역건설업체의 과당경쟁방지 조항을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
- ④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시 공기업 우선지정, 공공시설 위탁관리 제한 등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3. 향후 추진계획

- 합의된 조례는 안전행정부와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형편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제도 운영의 기본임

- 현재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기존규제 및 신설규제에 대한 개혁업무 수행)에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개 지방사무소장이 해당 시도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합리적 개선을 가속화 하려고 함



제4장

인·허가 관련규제의 외국사례

제1절 OECD 국가의 규제개혁 노력

제2절 주요 국가별 규제개혁 사례

제4장

인·허가 관련규제의 외국사례

제1절 OECD 국가의 규제개혁 노력

○ 규제개혁 추진 개요

- 최근의 개혁방향은 절차적 간소화와 같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총체적인 종합적인 규제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규제개혁의 (사전, 사후)성과를 측정하여 규제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신설되는 규제의 규제영향평가(RIA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사전분석의 장점을 살피서 향후 발생할 부담, 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규제의 무게를 줄이려는데 초점을 두기도 함
- 또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국가의 행정부담 측정시스템의 운영은 네델란드에서 개발된 SCM(Standard Cost Model)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하고 있음
- SCM 모델은 행정규제가 기업에 부과한 ‘정보제공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 행정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하는 행위를 측정 가능한 관리단위로 나누고 그 각각의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규제부담을 측정하여 사전경감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
- 실무적으로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간소화(Process re-engineering)를 더욱 가속화 하였음. 예를 들면, 인·허가를 신고로 바꾸거나, 신고서류 간소화,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명시 또는 "Silence is Consent"(규정된 처리시간 경과 후 자동승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통

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창업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들이 노력하고 있음

○ OECD 각국의 「행정부담 감축」 추진 배경

-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부담은 국가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업과 시민들이 인·허가의 신청, 행정서식 작성, 정부에 대한 보고의 무 이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 (Red Tape)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고 불만 제기
- 이러한 행정규제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저해
- 복잡한 행정절차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되며 창업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자국 기업 환경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

○ OECD 각국의 노력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불가피한 행정규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의 경향은 '절차간소화' 등 전통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규제품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담을 줄이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행정부담 감축 추진 전략(감축 방식)

- 각국의 정부시스템, 당면과제의 우선순위, 각 국가의 추진 역량 등에 따라 서로 다르나, 조사대상 22개국의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일반적 경향을 보임
- 대부분 국가에서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규제품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으로 추진 중
- 특히,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해서 신설 규제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부담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동시에 활용

- 신설 규제의 규제영향평가 (RIA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분석·검증
- 이러한 사전적 분석은 해당 규제가 시행된 후 실제로 초래한 부담 및 효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또, 영·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음

○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³⁾

- 이 모델은 중앙정부의 규제 의해 기업이 부과된 행정비용을 측정한다. 비용은 주로 기업체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면담조사를 통해 정부규제로 인해 기업이 소모한 시간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모델은 규제를 측정 가능한 3개 구성요소로 분리
- ① 정보의무(Information obligation) : 정보의무란 공공기관이나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고용조건과 같은 보고서)
- ② 자료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 자료 요구사항은 정보의무를 따르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각 요소이다(기업체명, 세금액)
- ③ 행정활동(administrative activities) : 행정활동은 각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내부활동일 수도 있고 위탁(outsourcing)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설명, 계산, 정보 보관).
- 그리고 나서 다음의 기본 비용에 관한 매개변수에 기초해 각 구성요소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산함
- ① 가격 : 가격은 세금, 급료 및 내부 행정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 또는 외부서비스를 위한 시간당 비용(hourly cost)으로 구성된다.
- ② 시간 :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모된 시간의 양
- ③ 수량 : 수량(quantity)은 영향을 받는 기업체의 인구 규모와 매년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빈도로 구성됨
- 이런 요소를 합치면 다음의 SCM 기초공식이 두출
- 즉, 행정활동 당 비용 + 가격 × 시간 × 수량 :

$$\text{Cost per administrative activity} = \text{Price} \times \text{Time} \times \text{Quantity}$$

- 행정규제 간소화는 ‘행정부담 감축’의 주요 수단
 -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최소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
 - 규제의 내용과 이행의무, 관련자료 등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관련 대상자에게 제공 (Information dissemination)
 - 정부와 기업, 또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 필요한 행정 자료 및 정보의 효과적 전달 (Transactional aspects)
 - 제공된 정보, 자료의 정부 부처간 공동 활용 (Sharing of information)
- 통합 전자 민원실 (Electronic one-stop shops : web portals)
 - 기존의 물리적 장소를 통합한 통합민원실(one-stop shops) 서비스 외에 온라인을 통해 정보자료를 얻고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 전자민원실 서비스가 보편화
 - 캐나다의 BizPal : 중앙·지방 정부의 모든 인·허가 관련 정보·자료 통합 제공
 - 덴마크 Virk :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보·자료와 서비스 외에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 및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 경제산업부, 노동부, 환경·지방부 등의 정부부처와 민간 협력사업으로 구축, 운영
 - 정보 제공과 자료의 전달·저장·공유와 같은 행정규제의 주요 프로세스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행정부담 감축 노력을 전자정부 구축과 연계 추진
- 서식 표준화
 - 정부 기관간 또는 정부와 민간의 자료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제출 자료 서식의 표준화를 추진
 - 네델란드 : 재무부 및 법무부의 책임 하에 추진된 기업재무정보 작성 표준화를 통해 2007년 350백만 유로 상당의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축

3) OECD 서울센터(한상연 옮김), 행정간소화를 위한 국가전략 : 규제개혁과 행정간소화,, p.62, 2008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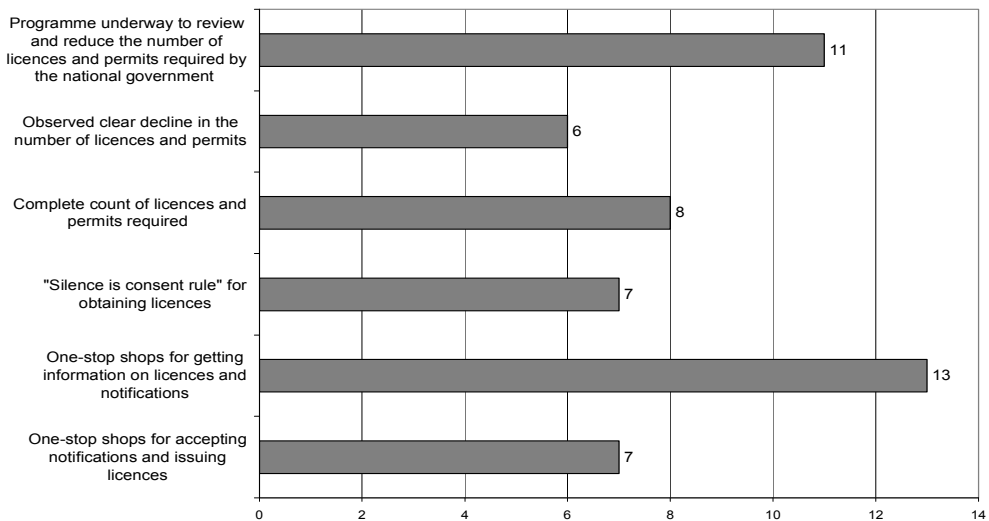
하였음

- 스웨덴: 공공정보 공동이용 추진위원회(Governmental Interoperability Board)는 정부기관, 기업 및 시민간 전자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을 발표

○ 인·허가 등 업무처리 간소화 (Process re-engineering)

- 인·허가를 신고로 바꾸거나, 신고서류 간소화,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명시 또는 "Silence is Consent"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창업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전개

<그림 4-1> OECD 국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현황 (22개국 설문 응답)



* Silence is Consent : 일정처리기간 경과 시까지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규제 적용대상의 합리화

- 규제의 적용대상 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고 제한된 규제집행 역량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에서는 규제적용을 ‘위험도 평가 (risk assessment)’에 따르게 하여 낮은 위험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또는 검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영국 : Hampton 법안에서 규제자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료의 요구, 검사방법의 적용, 벌칙의 적용 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기업의 규제준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 덴마크 :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히하고 집행부담을 줄인 환경 감독 제도를 도입. 감독기관은 환경관련 노력에 따라 기업을 3개 군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큰 기업에 대한 감독에 초점
- 규제 면제 프로그램 운영
- 규제준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규제의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쉽게 규제준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또는 자문서비스를 제공
 - * 덴마크 : 연간 50,000DKK 수입 이하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이하의 중소기업에는 각종 자료제공 의무를 면제
 - * 영국과 네델란드 등에서는 국민들이 규제발효 시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년 특정일 (1-2회)에만 신규규제의 시행이 되도록 함

제2절 주요 국가별 규제개혁 사례

1. 네덜란드의 행정 간소화

- 네덜란드 환경부(VROM)는 법적 구조 간소화(simplification of legal framework) 이니셔티브를 추진
 - 쓰레기 규제 의무 간소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의무들 간의 조화,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One-Stop-Shop 설치 등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0개의 현대화 과제를 추진

- 이를 통해 환경부는 당시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 목표인 25% (전체 행정부담 대비)를 상회하는 30%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허가요건 간소화

- 네덜란드 환경부는 2006년부터 허가요건들을 단일 구조로 통합하는 사업을 시작
- 서로 다른 정부차원(중앙, 지방, 기초 등)을 통틀어 약 25개의 다른 유형의 허가를 하나로 감소시킴
- 이러한 허가의 종류에는 화학 공장, 정유 공장, 화력발전소 등의 운영과 관련된 통합오염방지(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규제에 따른 허가, 건설 허가, 설치물이 들어서는 공간계획 허가 등이 포함됨
- 환경부는 웹 기반의 지원서 양식을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하여 지원과정의 안내와 도움을 제공

○ 현재 이미 30만여 개의 기업이 통합된 환경규제 아래에 있으며, 10만여 개의 기업은 아직 개별 허가제 하에 있으나,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4만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개별 허가제 적용

- 2013년 현재 개별 허가가 필요한 10만여 개 기업의 규제비용은 약 10억 유로임에 비해 통합 허가제 하의 30만여 개 기업의 환경규제 비용은 약 2억 2백만 유로에 불과함

2. 스웨덴의 허가절차 간소화

○ 스웨덴의 경우, 일부 활동에 대해 허가를 신고제로 대체하는 허가체계 간소화 계획을 추진

- 2010년 이후 이러한 허가요건은 6천여 개 업체에 적용되는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들 중 1,350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이 신고 의무로 대체될 전망

- 정부안에 따르면 약 15,000~20,000 건의 사업계획에 적용되는 신고의무 중 100건은 신고의무 조차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
- 허가요건의 신고대체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정부기관과 법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연간 3백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3. 독일의 허가 안내제도

- Permit pilot은 독일 Schleswig-Holstein의 산업협회, 농림부, 환경부에서 각각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제도
- 경우에 따라 permit pilot은 복잡한 승인 절차 중 어려운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서 기업은 하나의 창구만 상대하여 행정부담이 감소
- 독일의 허인가 신속처리
 - 독일은 이미 1996년부터 신속한 승인절차를 위해 허가제도에 관련한 두 가지 법규를 조정
 -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조정되었고, 지원서의 처리과정에 시간제한을 두었으며, 처리과정 중에 자세한 기초사항을 요구하도록 함

4. 각국의 규제정보처리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 사이트

○ REGINE initiative

- 벨기에 왈론(Walloon)에서는 IT 기술과 One-Stop-Shops를 이용하여, 지방 당국과 기업들이 환경 데이터의 보고서와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 모든 설문사항은 300개의 기업이 환경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하나의 환경 설문으로 통합되며 중복되는 규제에 대하여 통합을 허용함(예, ET and IPPC Directives, PRTR protocol). 또한 예상되는 규제들의 정보 제공과 상반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도 지원함

○ 폐기물 선적을 위한 전자 도구 (EUDIN initiative)

- 유단정책은 EU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폐기물 선적에 대한 문서 기반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는 이 정책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절차를 채용하였음 EUDIN은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절차를 보다 빠르게 하며, 자원사용을 절약할 수 있고예, 종이등),다른 기관의 사람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화 된 의사소통 방식의 채용으로 보다 혁신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Hercules project

- 스페인의 허큘리스 프로젝트는 위험폐기물에 대한 사용정보, 처리, 보관 그리고 수집에 대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며, 이것은 강화된 전자 인증 장치를 제공. 이 프로젝트의 주된 이익은 모든 위험폐기물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서의 양을 줄이며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있어 간소화하기 위함임

○ 위험 기반의 규제 : OPRA(Operational risk appraisal)

- 영국 환경청의 오프라는 향상된 환경 성과와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성과와 환경 법률아래에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와줌

- 아일랜드 당국은 허가 설비 혹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음. 이는 5가지로 구분되는데, 1. 시설에서의 활동 복잡성 2, 방출폐기물의 수준과 종류, 3, 활동 지역 4, 운영 관리 기준 5, 시설물 기록 강화로 구분. 이 다섯 가지의 분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트이며, 각각의 분류는 점수를 측정하고 합산하여 종합적인 위험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웹 기반의 요구사항 안내 도구
 - 노르웨이는 규제 도움(Regel help(regulation help))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법률 구조의 구분과 접근에 도움을 주고 있음. 온라인 웹 사이트는 10개 산업분야를 위하여 2005년 시작하였고, 2007년 50개 산업분야까지 확장하였음
- EnviroCentre
 - 아일랜드는 EnviroCentre를 설립하여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이 사이트는 특별히 아일랜드 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자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환경 문제 자각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이 사이트는 아일랜드의 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환경 문제에 대한 조언과 안내들로 이루어졌음
- NetRegs
 - 영국은 NetRegs를 설립하여 영국 중소기업이 영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이트는 환경과 관련된 법과 좋은 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NetRegs는 많은 자금이 사용됨. 약 2만 5천 파운드가 첫 설립을 위하여 쓰여졌고, 이후 3년간 3백5십만 파운드의 돈이 사용되었음. 그러나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되고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발전하고 있음



제5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유권해석 명확화 방안

제1절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규제사무 표준화 방안

제2절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인·허가 규제사무 개선방안

제3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제5장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유권해석
명확화 방안

제1절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규제사무 표준화 방안

1.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표준화 사례 및 방안

 표준화 방안 도출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를 조사하여 규제사무에 대하여 정리하고, 유사사무의 경우 비규제 사무도 구분함
- 먼저 기초자치단체별로 인·허가 규제 및 관련 유사규제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규제조항을 도출한 후 중앙부처 상위법령, 시도의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을 확인함
- 조례를 통해 도출된 규제내용과 등록규제 간 비교 검토
 - － 각 규제는 분야별(재정, 도시, 환경, 건축 등), 유형별(인허가, 기준, 행정별 등), 사무특성별(자치, 위임사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
 - － 도출된 기초자치단체 규제 내용 및 각 지자체별 등록규제 비교 등을 토대로 규제 표준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마련함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4개)

- 성남시 (인구 50만 이상)
- 원주시 (인구 30만 이상)
- 서울 마포구 (지자체 자치구)

- 대구시 달성군 (광역시 소속 도농복합형 군)

규제사무 조사대상

- 주요 분야(인허가 포함) 중심으로 규제사무 검토
- 위임사무가 많은 분야 중심으로 규제사무 검토
- 자치사무가 많은 분야 중심으로 규제사무 검토
- 상위법령상 근거규제 중심으로 규제사무 검토

2.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표준화 사례 분석 결과

조사결과 정리

- 각 지자체에 기준이 되는 규제사무 및 인·허가사무, 인·허가 유사사무 등으로 재정리 (표준규제/비규제로 구분)
-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정리
- 지자체 별로 규제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규제사무들을 발굴하여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
- 다음 표는 4개 기초자치단체의 등록규제 명부로부터 분석 후, 도출한 규제사무이며 그 분류유형임. 인·허가는 55개 정도이고, 인·허가 유사규제는 면허, 승인, 지정 등 그 유형이 다양함

<표 5-1> 기초자치단체별·유형별 등록규제사무 (2013년 9월 현재)

분류	성남시	원주시	마포구	대구달성군	규제유형별 총합계
허 가	20	12	6	12	50
인 가	2			3	5
면 허	2	7			9
특 허					

분류	성남시	원주시	마포구	대구달성군	규제유형별 총합계
승 인	1	2	4		7
지 정	2			2	4
추 천					
동 의					
행정질서별	7	13	6	5	31
단 속		5	19		24
지 도	3	16	1	4	24
명 령	5	7	13	2	25
결 정			21		21
증 명	2	6			8
확 인	7			1	8
인 정					
검 사	1	12			13
시 험					
중 지	4		8		12
금 지	1	4	6		11
기준설정	34		14	30	78
제출의무	10		10	1	21
통지의무					
고용의무					
등록의무		11			11
보고의무		5	2		7
신 청	1	23	10		34
신 고	10	16	9	5	40
부 답	6	19	2		27
기 타	69		2	16	87
총합계	187	158	133	80	557

□ 4개 기초자치단체 규제사무의 관련 부문

<표 5-2> 기준규제 사무 분류표

부문	기준 규제사무	비고
■ 시설물 설치 및 이용 부문	□ 교통관련 시설물 관련 표준규제 □ 공동구 시설물 관련 표준규제 □ 주차장 시설물 등에 관한 표준규제사무	
■ 부담금 부문	□ 부담금 관련 표준규제	
■ 점용료 부문	□ 점용료징수 관련 표준규제	
■ 사용료 부문	□ 사용료징수 관련 표준규제	
■ 과태료 부문	□ 과태료 관련 표준규제	
■ 도시부문	□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표준규제 □ 온천수 표준규제	

부문	기준 규제사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단 관련 표준규제 □ 청소년 통행금지 표준규제 	
■ 도시계획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관련 표준규제 □ 건축물 관련 표준규제 □ 견폐율 관련 표준규제 □ 조경시설 관련 표준규제 □ 지구단위계획 관련 표준규제 □ 토지 관련 표준규제 □ 환지 관련 표준규제 	
■ 문화예술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표준규제 □ 미술장식 관련 표준규제 	
■ 건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관련 표준규제 □ 건축물규제 관련 표준규제 □ 건축선 관련 표준규제 □ 건축지도원 관련 표준규제 □ 건축허가 □ 맞벽건축 관련 표준규제 □ 안전관리 관련 표준규제 □ 옥외광고물 관련 표준규제 □ 이행강제금 관련 표준규제 	
■ 교통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 면허 관련 표준규제 	
■ 환경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관련 표준규제 □ 생활폐기물 관련 표준규제 □ 자연경관 보전 관련 표준규제 	
■ 주거환경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분할 관련 표준규제 □ 매각규모 관련 표준규제 □ 조명 관련 표준규제 □ 주차장 관련 표준규제 	
■ 농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량 관리 관련 표준규제 	
■ 재해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관련 표준규제 □ 재해·제설·제빙책임 관련 표준규제 	

□ 4개 기초자치단체 규제사무 중에서 규제와 비규제 업무 구분

<표 5-3> 자치단체의 규제사무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분표

부문	규 제	비 규 제	비 고
시설물 설치 및 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이용 자격 및 범위 ○위탁·이용 심사기준 및 우선 순위 ○수탁·사용자 의무 ○시설물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운영·사용 신청 및 계약 근거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징수 ○예산보조, 재산관리 ○사업자금 대여, 상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국공립보육시설,

부문	규 제	비 규 제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해제·제한 ○허가변경 승인·취소 ○사용허가 시 시설이용 이행기간 설정 ○사업계획, 기구·정원, 운영규정 등 승인 ○종사자 자격 등 제한 ○권리이전제한, 양도금지, 승계신고 ○운영비 일부 자부담 근거 ○이용제한, 이용료 승인, 요금보고, 대행 사용료 징수(의무불이행자) ○시설 이용·관리·운영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료, ○원상회복, 변상, 보상, 이차보전 	<p>문화체육시설, 장모시설, 청소년공부방, 자활공동체, 창업보육센터, 매점 및 자판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인의 입장에서 하는 행위</p>
<p>점·사용 및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대상, 허가 및 취소 ○승계신고 및 변경허가 신청 ○점(사)용료 징수 ○시설 설치(개수)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보증금 납부 ○원상 회복 	<p>도로·공원, 정기·임시 시장, 해수욕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p>
<p>도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 허가 및 취소 - 허가 규모 및 기준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 각종 건축 및 행위 제한 -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 토지소유자 행위대리 신고 - 소유자 권리 변동 신고 - 토지 사용 승인 -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 조경 면적 제한 - 건폐율·용적율 지정 - 건축물 규모, 높이, 형태 제한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 조명장치 기준 -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 건축선, 건폐율, 용적율 지정 - 도로경계 제한 - 대지 분할 제한 - 개발제한구역 건축 기준 - 양여토지 가격 결정 - 매각 규모 및 특약 등기 ○조경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설관리 행위 제한 - 손상 부담금 징수 - 이식비용 원인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상환 기간, 이율 - 체비지·보류지·공공 용지 확보 및 부담 - 환지 지정 및 청산 - 체비지 및 환지예정지 관리 - 측량 수수료 징수 - 체비지 매매계약 및 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비용 - 공통 비용 부담 ○주거환경 개선 ○조경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설 관리 권장 	

부문	규 제	비 규 제	비 고
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천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대상, 허가제한·취소 - 권리·의무 승계 신고 - 계량기 설치 의무 - 계량기 기물 훼손 부담 - 계량기 설치 철거 승인 - 급수시설공사 사전 승인 - 급수시설 변경·개조 승인 - 급수신고 - 급수정지·제한 - 공동급수 명령 및 공사 직권 시행 - 급수공사비 부담, 장치 관리의무, 하자책임 - 급수공사 관급자재 사용 의무 - 급수장치 검사 및 조치 명령 - 급수 대행자 지정 - 대행업 허가 기준 - 대행업 변경 신고 - 대행업 종업원 고용의무 - 급수장치 손료 부과 - 급수장치 시설분담금 납부 - 원상복구 및 배상 보증금 예치 - 시설공사 승인 - 부정사용자 과태료 - 사용료 가산금 - 온천수 사용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천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계약 - 공사비 납부 - 하자보증 방법 - 계량기 설치 위치 지정 - 계량기 시험 청구 비용 - 급수정지 해제 - 급수장치 손료 징수방법 - 가압장치 설치자 부담 - 공사비 납부 기한 - 원상복구 - 대행업 허가 유효기간 - 급수용구 파손 및 수리 - 사용요금 이의신청 - 사용료 연대 책임 	
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자격 - 분양선수금 승인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한 수익자에 대한 소요 사업비 일부 부담 - 분양 양도 및 대여 금지 - 양도 및 대여 사전 승인 - 환매권 유보 조건 부여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입주자 부담 의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준, 통행제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결유지 관리 - 이동화장실 설치 -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 -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사업비 부담 - 용자·보조 지원업체 자격 - 분양 및 대금 납부 - 대금 정산 - 소유권 이전 비용 입주자 부담 - 용자금·할부금 상환 - 보조 신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심의 절차 규정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사)용료 징수 	

부문	규 제	비 규 제	비 고
<p>건 축</p>	<p>○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 예치금 산정 및 반환 방법 - 건축허가 수수료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 사용 승인 등 검사 확인 - 업무대행자 자격 및 의무 - 유지관리 대상 집합 건축물의 범위 - 건축지도원 자격 등 - 대지 조경 완화 대상 - 조경대신 설치할 시설물 - 조경·건축 기준 - 건축선 지정 - 건축물 높이 제한 - 이행강제금 부과 - 맞벽건축 가능구역 및 건축 기준 <p>○옥외 광고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광고물 관리 신고 - 변경 신고(연장 등) - 표시방법 제한 - 표시금지 물건 - 광고물 설치대상 및 방법 - 안전도검사 대상 - 안전도검사 위탁대상자 - 위탁대상자 시설설치 기준 - 종사자 교육 및 교육비 부담 - 과태료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p>○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권자의 업무대행 범위 - 대지분할 제한, 공지거리 <p>○옥외 광고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반환 	
<p>교통</p>	<p>○개인택시면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우선순위 - 제외 대상 <p>○휠체어 택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승인 <p>○주차장 설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계획 인가 - 설치 기준 	<p>○휠체어 택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 약정, 이용료 징수 <p>○주차장 설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보조지원 대상자 	
<p>환 경</p>	<p>○폐수처리 및 폐기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배출 및 분리 보관 - 건물소유자 등의 의무 - 명령 통보 및 불이행 처분 - 보관용기 설치 - 공작물 설치 허가 	<p>○폐수처리 및 폐기물 관리</p>	

부문	규 제	비 규 제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봉투 판매계약 체결 -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 지도·점검 - 대행자 지정 - 수탁자 명령 준수 의무 - 가축사육 제한(허가) ○자연경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감독, 위탁 취소 ○야생 동·식물 피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보전 조치 권고 ○야생 동·식물 피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발생 신고, 신고기한 - 피해액 산정 - 지원 기준, 지원 제외 - 보상 방법, 지급 절차 	
농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개량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역의 권리 변동내역 신고 - 농지계량계 조직, 등록 - 농지계량계 의무 - 상환기간 전 용자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개량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부과 - 토지가격 평정 - 환지 및 정산, 공탁 - 일시 사용자 지정 - 손실보상금 징수 - 시설 점검 및 복구 보고 - 농지계량계 경비 부과 - 시설 용도폐지 신청 - 용자 조건, 상환기간 - 용자 미상환 조치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표준규제사무

-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관련규제의 표준규제화를 위한 공통기준
 - 인·허가 관련규제 내용이 동일한 것
 - 인·허가 관련규제 사무명이 동일한 것
 - 인·허가 관련규제 사무분야와 유형이 동일한 것
 - 인·허가 관련규제 사무의 내용 및 성격이 동일한 것
 - 이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세분할 수 있으나, 세분하지 않아도 사무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로 구분
 - 인·허가 관련규제 사무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동일한 수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로 정리하여 표

준규제 사무의 리스트를 만들어 전파 필요

- 행정규제의 규제사무명이 다를 경우
 - 규제사무의 내용은 동일하여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이나 규제사무명을 달리 한 경우라도 인·허가 관련 표준규제사무 기준이 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허가 관련규제의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규제사무명을 갖지만 행정규제의 분야, 유형,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 규제의 내용과 규제유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분야가 다를 경우에도 행정규제로서의 존치 타당성을 가지면 인·허가 관련 표준규제사무(이 경우에는 공통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행정규제 중 규제성격상 공통성을 갖지 않은 규제의 경우
 - 분야별, 유형별, 관리주체별 등으로 행정규제로서 빈도수가 높은 내용들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나타난 규제형태 중 높은 순위에 따라서 인·허가 관련 표준규제사무로 가능

3.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규제사무 표준

- 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시행하는 규제사무 유형 및 내용

기초자치단체	규제사무 유형	수
성남시, 원주시, 서울 마포구, 대구 달성군	기준설정	17
	결정	4
	허가	1
	지정	1
	승인	1
	부담	1
	명령	1
	단속	1
	제출의무	1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건설 교통 /교통 지도	보조금	보조금의 부적합사용시 반환	보조금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 원금과보조금 수령일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 시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1, 개정'05.6.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 조의42	주차장법	위임	서울시 마포구	결정
도시 주택	보조금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성남시 주택조례제 5조1항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위임	경기도 성남시	제출 의무
경제 환경	보조금	용지매입보조금 지원한도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제15조2항		자치	강원도 원주시	기준 설정
주민 생활 지원	용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용자 금액 등	일반용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제4조 4항		자치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일반 행정	장학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통장을 사작하거나 해촉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남시통장 장학금지급 조례 제8조		자치	경기도 성남시	지정
제6편 제2장 (기업 지원) 재정 경제	기금	중소기업육성 기금 융자승인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휴·폐업중인 자 허위 또는 기타...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제 13조1항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위임	경기도 성남시	승인
도시 관리/주택	도시계획 환지	환지 및 분양기준	③사유토지주가 동일구역 안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이를 분양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토지만으로 토지이용이 곤란한 경우 증환지 하고, 그 대금은 금전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제 22조3	도시재개발법	위임	서울시 마포구	결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도시 건설 /건축	도시 계획 조정 시설	식재 등 조정기준 및 대지안의 조정면적 확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성남시건축 조례 제13조	건축법 제32조 제1항·	위임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교통 행정 /	도시 계획 건축물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조례(달성)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용도별 부설주차장 확보기준	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14조	주차장 법6조	위임	대구광역시달성군	기준 설정
도시 환경 /주택	주거 환경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지구안의 연면적 13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가구주택이 6가구(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세대)당 0.5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1제항제1호 다목,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 12. 16, 2003. 1. 10 2006.5.10>	마산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제18 조	주차장 법제19 조	위임	경상남도마산시	기준 설정
교통 행정 /	주거환경 주차장	주차장내 불법행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제19조 (과징금 처분)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제20조	주차장 법 제24조의2, 제30조 .	위임	경기도 성남시	부담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p>정하여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 처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개정 2000.11.21]</p>					
도시 환경 /주택	주거 환경 매각 규모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대금 납입	<p>제5조(계약 체결과 대금 납부)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낙찰액(매수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여(임대포함)하고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p>	성남시도시 계획토지구 획정리사업 지구내체비 지매각규칙 제5조 제1항	토지구 획정리 사업법 제66조	위임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주민 생활 지원	도시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의 관리및 관리기준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1.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 게시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내 내.외부 소독 실시	성남시공중화장실치 및 관리조례제 5조,6조,7조,8조,9조,10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 8조	위임	경기도 성남시	명령
행정 관리 /문화 체육	문화 예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1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한다.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개정 2007.5.3)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문화예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제8조	지방자치법제 127조 제130조 제135조	위임	서울시 마포구	기준 설정
건설 도시	건축 건축 허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1항의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며, 건축물의 일부분만을 제한높이이상으로 하거나 박공지붕으로 하는 등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2항	도시계획법	위임	강원도 원주시	기준 설정
건설 도시	건축 건축선	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영 제113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	원주시 건축조례71조2항	건축법	위임	강원도 원주시	기준 설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p>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p> <p>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읍·면의 경우 3퍼센트)</p> <p>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p>					
도시 건설 /건축	건축 건축지 도원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지도원 지정기준 절차	<p>제12조(건축지도원)①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면허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p> <p>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p> <p>7. 고등학교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시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p>	성남시건축 조례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위임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건설 교통	교통 개인 택시 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시 거주요건	성남시 운전지역의 지리등을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면허신청 일로부터 역산하여 성남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 되어야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득할 수 있음	성남시개인 택시운송사 업면허사무 처리규정 제3조 제2항, 제3항	여객자 동차운 수사업 법시행 규칙 제17조 제7항 제2호	위임	경기도 성남시	허가
기획 재정 /지역 경제	환경 오수분 노축산 폐수 처리	주변여건 영향시 조치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축 사육제한에 관한조례제 6조2	오수· 분뇨및 축산폐 수의처 리에관 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임	서울시 마포구	단속
건설 도시	환경 자연경 관 보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 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원주시 도시계획조 례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강원도 원주시	기준 설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설 도시 (재난 안전 관리 과)	재해 제설 제빙 책임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4조	자연 재해 대책법	위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정
건축	재해 제설 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3조	자연 재해 대책법 27조	위임	충청남도 공주시	결정
건설 교통	시설물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성남시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제4 조1항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위임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주민 생활 지원 (교통 행정 과)	건축 건축물 규제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11조1항	주차장 법	위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준 설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도시 계획	건축 건축물 규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근린생활 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1항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도시 주택	건축 건축물 규제	건축가능한 가설건축물의 범위	제7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연면적 200㎡ 미만의 축사 3. 버섯재배사	성남시건축 조례 제7조	건축법 제15조 제1항·	위임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건설 도시 (공원 녹지 과)	건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사용허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광고물 등의 설치 2.물품의 판매, 사진촬영등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3조1항		위임	대구광역시달성군	기준 설정

규제 분야	부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조례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구분	자치단체명	유형
			3.삭제 (2000. 12. 11) 4.공원시설물의 사용 5.기타 공원의 사용 또는 점용					
도시 주택	건축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및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이 법·영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4조 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임	경기도 성남시	기준 설정

제2절 유권해석 명확화를 위한 인·허가 규제사무 개선방안

1. 완화된 규제유형으로의 전환 (인허가의 신고제 전환)

○ 기본개념

- 규제의 수준 즉 규제강도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를 비롯한 등록제도의 신고제로의 전환이 대표적인 규제수준 완화 유형으로 제시됨
- 현행 규제사무 유형을 규제수준 완화(deregulation)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규제의 강도가 강한 유형부터 ‘사전승인>투입기준>산출기준>정보의무’의 순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전승인 유형에서 정보규제로의 전환이나 투입기준 규제에서 산출기준 규제로의 전환 등은 각 규제사무 유형의 수준 완화를 의미

<표 5-4>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유형 구분

규제유형	규제사무 유형별 규제형태
사전승인규제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기타 1
투입기준규제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 2
산출기준규제	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고용의무, 기준설정, 기타 3
정보규제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타 4

○ 적용사례

유원지내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 유원지(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신고로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지자체별로 행정처리가 상이
 - ※ '10년 국토해양부는 유원지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허가'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
-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서도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변경
 - ▷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대한 유권해석 지침 통보(국토해양부)

해외사례

스웨덴의 경우, 허가 처리과정의 간소화 작업의 하나로 허가 요건들을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약 6000개의 지원서가 처리과정중에 있다. 여기에서 1350개의 경우 요건들을 신고의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장려하고 있다. 신고의무로 대체하는 것은 약 15,000~20,000개의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1250개의 지원서의 경우 신고 의무가 현재의 신고 의무제도 아래에서 오히려 의무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종합 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천만 유로정도이다.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인허가 및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항공운임 신고절차 개선	신고운임 처리와 인가운임 처리를 분리 처리하고, 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신고운임 제도를 개선
	지주회사내 손자회사 편입시 편입승인 완화	사업구조 개편 목적의 지분이동으로 발생하는 손자회사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편입신고로 개선
	금융기관의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해 신고.수리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관련 규제의 완화	주류제조방법 변경.추가시 사전승인제도의 신고제로의 완화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실시계획 변경승인제도 개선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시에는 승인절차 없이 신고로써 변경가능
	안정업소 및 치과 기공소 등록.인정 및 변경 신고제 개선	변경사항은 정기적 신고로 개선
	유원지내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건축 가능토록 개선	
	외국신문·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지국설치 허가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중요생산어업허가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절차	허가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기본적으로 허가제->신고제전환, 관계기관 사후협의 -특정유형 및 규모의 광고물에 제한적으로 허가제적용
	체육시설업 등록 및 조건부 등록	등록대상체육시설업등록제의신고제전환검토 -또는 임시등록, 사후확인
	체육시설업 신고 등	신고즉시 수리, 사후확인 가능

2. 의제처리 범위 확대

○ 기본개념

-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협의,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위한 의제처리 범위의 확대는 사업자의 행정편의 제고 및 사업기간 단축을 가능하게 함

○ 적용사례 1: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임.

- 승인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승인효과 : 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처리절차
 창업자 -->①사업계획승인신청 -->창업민원실 -->②협의요청 -->창업관련인업체<--④승인통지 <--(시,군,구)<--③협의통보<--허가사항 처리기관 제도이용시 이점 및 사후관리
 - 행정절차의 간소화
 -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특별절차에 해당됨.
 - 부담금의 감면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관련법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제22조

○ 적용사례 2: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다른 법령에 의한 하천법상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의제 처리를 추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다른 법령에 의한 하천법상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의제 처리를 추가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관련 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봄

▶ 관련법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3항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의제처리 범위 확대	구역 지정 및 개발 및 개발계획 개선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정비 및 권한위임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제도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
	골프장 사업부지 확보부담 완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되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화

3.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동의(silence is consent principle)

○ 기본개념

- 규제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 규제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규제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 내에 규제기관의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해당업무에 대해 자동적으로 협의 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이러한 “silence is consent” 원칙은 현재 사전협의나 승인업무에 적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 업무 자체에도 적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인가나 허가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있음

○ 적용사례 1

문화재 발굴조사 변경허가 절차 개선

- 동일 발굴허가면적에서 유구 중첩, 유물의 다량 출토 등으로 ‘100일 (실조사일수) 이내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포함한 발굴조사 기간 연장신고서 등을 3일 이전에 제출하면 당초 허가사항 중 ‘조사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봄

○ 적용사례 2

<p>일정기한 내 의견회신 않는 경우 협의 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 이때, 이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봄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음. 계속되는 보완요청으로 기한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문제 방지 <p>▷ 관련법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10조</p>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승인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제도	의제처리 관련 협의제도 개선
	(산업단지특례법 제10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한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이견 없이 신청내용을 협의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간주	
	(산집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공장설립 인허가를 위해 인허가권자가 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협의시 법정 협의기간 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산업단지특례법 제10조제4항)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4. 사후 확인(ex post notification)

○ 기본개념

- 사전 협의나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규제자의 신청이나 요구가 있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규제관련 민원을 수리하고 사후적으로 협의, 확인 및 보고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간 단축을 위해 등록증 발급원칙을 사전 현지확인을 의무화(positive list system)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즉시발급하고 사전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

준을 마련토록 negative list system으로 변경

○ 적용사례 1: 문화재 발굴조사 및 처리기간 단축

1. 개요

-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거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발굴완료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先 사업시행 확인처분, 後 발굴조사완료 처분의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규제 내용

1)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의 검토기간

- 문화재청장이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각 15일)

2) 발굴조사 변경허가 절차

- 당초 발굴허가사항 중 유구의 중첩, 출토유물의 과다 등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변경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장기로 소요

3) 사업시행 절차

- 발굴조사 완료 후 유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장 47일이 소요

3. 규제절차 간소화 내용

1)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의 검토기간 단축

2) 발굴조사 변경허가 절차 개선

3) 사업시행 절차 개선

- 지도위원회에서 유적이거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시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FAX 등 이용),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4. 기대 효과

- 문화재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지체 방지 등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체 방지가 기대됨
- 발굴완료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최장47일)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사후보고	일시 수입되는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폐지	일시 수입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하여 공휴일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담보 제공하도록 변경

5. 동시 절차진행

○ 기본개념

- 규제준수를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여 여러 규제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

○ 적용사례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1. 경제자유구역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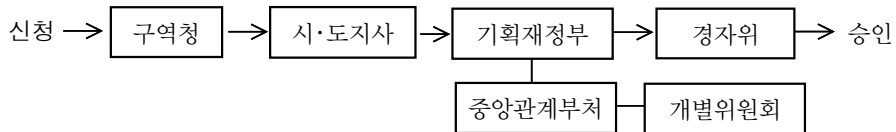
-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12월 30일 제정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고유업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문서의 외국어 발간·접수·처리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내용임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

의 착수,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세제 및 자금지원, 산업평화 유지, 정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권한의 위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2.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 절차

-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협의를 거친 다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도지사 협의와 중앙부처 협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함
- 실시계획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 실시함. 다만, 실시계획 승인 시에도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실적으로 협의에 장기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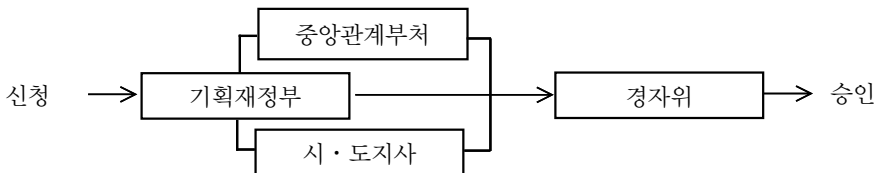
<그림 5-1>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 절차



3. 규제절차 간소화 내용

-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하여 하도록 함

<그림 5-2> 개선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절차



4. 기대 효과

- 개발사업 협의기간 단축
 - 최장 12개월여 → 5개월
-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본격화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동시 절차진행	소방관련 검사의 통합 시행 근거 마련	소방검사와 출입검사 시행의 동시시행 법적 근거 마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사용·수용권 부여 여부 일괄검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의 수용·사용권 부여 여부까지 일괄처리
	산업단지개발지원 TF에서 시행하고,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일괄조정	시군, 시도, 군부대 등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동시진행하고,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일괄조정
	산업단지 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 통합 주민설명회 및 통합공람 실시	
	관광개발시 경관 평가 중복 개선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보존자원 반출허가기준 및 절차	현지확인과 허가기준 검토, 허가결정 및 반출증 교부를 동시진행

6. 유사절차 통합

○ 기본개념

- 규제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요구하는 행정절차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경우 이를 통합
-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으로 이루어진 2단계 절차를 1단계로 통합

○ 적용사례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통합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 공장부지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단지는 대규모의 계획 입지를 조성하여 여러 공장들이 함께 입주함에 따라 개별 공장입지에 비하여 난개발 방지 및 산업 집적화 효과가 높음
- 기존의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2~4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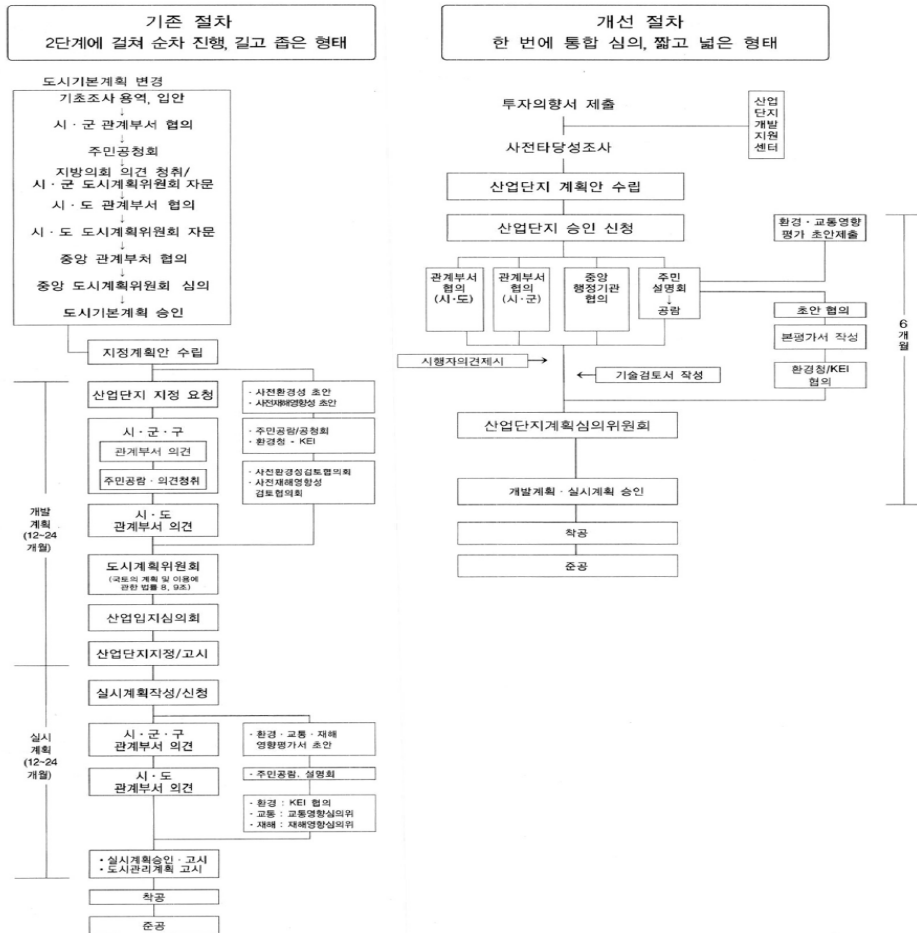
기간이 소요되어 입주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기에 공장 이전을 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자체 입장에서 도 공장 유지에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의 내용

- 특례법은 종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요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임
 - 이 센터는 투자의향서의 접수, 입지타당성의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업무,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 등을 담당하게 됨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
 -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만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음
 - 특례법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1개의 계획(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
-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의 시행
 - 기존에는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의절차가 각각 이루어졌음
 - 특례법은 다양한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토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에 기한제를 도입하고 협의기관의 보완요청 횟수도 1회에 한정함
- 관계기관 간 이견조정 절차
 - 기존에는 이견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어 사소한 이견이라도 관계기관 간 의견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
 - 특례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정권자나 국토해양부장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총리실에 조정권한을 부여함
- 위원회 심의절차 의제화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종전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등 7개 분야의 위원회 심의를 각각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음
- 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7개 분야 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또한 지정권자 및 협의기관의 과도한 보완요구, 업무의 느장처리 등을 막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준수 의무 명시하고 있음

<그림 5-3> 개선 전과 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비교



3. 기대 효과

- 기존의 절차에 따르면 2~4년 정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음
-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에 따른 기업 운영의 수월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음
- 개발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

○ 타 지역 적용사례2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 건축심의 폐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확정
 - 지구단위계획에는 산업용지내의 설립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외관, 색채, 건축선 등이 규정
 -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지구단위계획 확정이후 공장설립과정에서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된 동일한 건축사항에 대해 별도로 시·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중복적으로 거쳐야 함
 - 특히, 건축법령에서 우입하지 아니한 건축심의를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여 과도하게 규제함에 따라 위입입법의 원칙에 위배
 -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주의 개별 건축심의를 폐지(인천광역시)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유사절차 통합	소상공인 자격-면허 제도 통합 운영	조리사 및 이.미용사 자격.면허증 통합방안 마련
	지역 난방설비 통합검사 시행	계속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지침 마련
	액화석유가스 공인검사기관에 대한 중복 지도감독 간소화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이상 시행하는 지도.확인을 KOLAS인정 사후관리 주기와 연계하여 통합 시행
	과도한 승강기 안전점검 의무의 완화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면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개선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방안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선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 하여 통합고시 제정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하도급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건설 하도급 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 체계를 일원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 일원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 일원화(사업장 명칭=>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발계획→ 실시계획 2단계 절차’를 ‘1단계’로 통합	
	생동성시험 실시 진입 신속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7. 절차생략 및 단계 축소

○ 기본개념

- 규제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불필요한 경우 절차를 생략하거나 처리 단계를 축소
- 특정 지역·규모·유형별로 특정한 규제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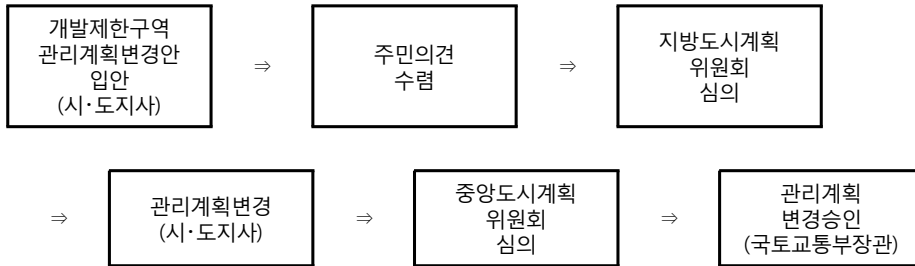
○ 적용사례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 생략

<p>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요</p> <p><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p> <p><input type="checkbox"/>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 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됨</p>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 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도 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5-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내용

-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공항시설지구에서 시설을 신설·변경 할 경우, 그 시설이 공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일 때는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16개 공항중 김해·울산·대구·광주·김포 등 5개 공항만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시설지구에 속함
 - 공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항공법상 안전·훈련·보안시설, 도로 및 주차장 등을 말하고, 여객 편의, 판매, 체육시설 등은 제외됨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절차생략 및 축소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부담 완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 중복 개선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부담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 건축심의 폐지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탄력적 운영	몇몇 경우의 환경부 승인 절차 생략하고 연도별로 일괄 변경승인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 개선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평가서를 사후보완,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
	소규모 건축행위의 군부대 사전협의절차 생략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협의 완료된 건축물의 면적, 위치의 경미한 변경에는 협의 생략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방산업체의 화재보험 등 가입관련 방식 개선	방산업체 및 국가시설에 대해 모두 화보가입시 화보협회 경유절차를 폐지
	상장형 펀드에 대한 공시의무 절차 간소화	상장형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등은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간소화된 공시방법을 사용
	영업범위의 현실화 등 위탁급식영업 관련 규제 개선	중복적인 식품위생 교육의무 폐지
	건설 폐기물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이중보고로 인한 불필요한 보고를 일원화할 필요로 보고의무 삭제
	국외여행허가자의 출국신고의무 폐지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간 관리대상자 통제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출국확인 절차 생략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합리화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일원화
	제조(수입)품목허가 절차 간소화	제조품목 허가, 수입품목 허가 신청시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의무를 면제
	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	
	교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제조업 창업 절차 간소화	

- 이상은 규제의 내용이나 대상 및 규제수단 개선과 관련된 유형이 아닌 기존 규제의 집행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규제개혁 수단을 제시

8. 적극적 개선 방안

가. 규제절차 재설계 (규제부서 re-engineering, one-stop shop, ICT 도입 등)

- 기본개념

- 규제 관련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일괄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절차를 실질적으로 재설계(re-design)
- 예를 들면 one-stop shop, 행정문서 및 각종 서식 전자화, 규제담당 부서 재조직, 전자보고시스템 등의 구축
- 일괄처리시스템(one-stop shop) 구축: 행정처리절차를 재설계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제거되거나 개선될 수 있음
- 행정문서 전자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행정부담 급격 감소, 인터넷 접속 통한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 가능(예: 전자세금신고, 온라인 교육상담 서비스, 온라인 출생신고 등)
- 행정서식의 전자화: 무역, 노동 및 세금관련 양식
- 백오피스(back office) 프로세스 재설계 및 자동화 통한 간소화: 전자 인적자원관리, 전자회계 등
- 기업의 대정부 전자보고 시스템 및 전자정보 보관 및 유통

○ 적용사례

- 복잡한 개발사업 관련한 규제업무에서 규제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먼저 (조건부)사업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승인에 필요한 규제절차가 진행되는 선승인, 후 절차 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제절차의 재설계가 함께 요구됨

○ 거시적 규제개혁 수단이 전체 규제의 생성과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반면 미시적 관점의 규제개혁 수단은 개별 규제의 내용과 집행 절차 개선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미시적 규제개혁 수단을 발굴

- 미시적 관점의 규제개혁 수단은 개혁대상 규제의 본질적 측면, 즉 규제의 실체(substance)에 해당하는 내용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본질적 규제개혁 수단과 절차적 규제개혁 수단
 - 규제개혁을 개혁대상의 본질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 (Thomson & Jones, 1982; 김정해, 2007; 김용우, 2000) 할 수 있는데
 - 본질적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본질 및 규제수단의 변경, 규제대안의 채택, 규제대상의 확대 및 축소, 개별 또는 전체 규제의 내용 및 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며
 - 절차적 규제개혁은 본질적 규제개혁의 방향에 부합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의 형성, 전달 및 집행과정의 개선을 의미
- 이하의 분석에서는 본질적 규제개혁 수단은 규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규제내용 개선수단’으로 절차적 규제개혁 수단은 규제가 집행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규제절차 개선수단’으로 명명

나. 규제폐지

- 기본개념
 -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본질적 규제개선 수단
- 적용사례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규제의 폐지	유한회사 최저 자본금 폐지	유한회사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위험물운송자 관련 자격증 휴대의무 개선	자격증 등에 대한 휴대의무 폐지
	자동차보험관련 예정이익률 설정규제 폐지	예정이익률 설정제한 폐지 추진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편입의무 폐지	실물부동산 편입의무를 폐지
	일반투자자의 투자가능 외화증권 제한규제 폐지	일반투자자의 투자가능 외화증권범위에 대한 제한 폐지
	전업 재보험사 사업인가시 손해사정업무 요건 폐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사정사 확보의무가 없음으로 유권해석
	산간·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거주자에 대한 여행자수표 매도를 허용하고, 외화매각 한도 폐지
	금융회사의 신용파생금융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외국환 업무로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거래시 신고의무 폐지	서 수행하는 모든 신용 파생금융 거래의 신고의무 폐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관련 규제의 완화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장소 제한 폐지
	국외여행허가자의 출국신고의무 폐지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간 관리대상자 통제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출국확인 절차 생략
	한약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폐지
	동물약국의 면적 기준 폐지	동물약국의 면적 기준 폐지
	입원실없는 정신보건시설의 방염시설 설치의무 폐지	입원실 없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는 방염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 건축심의 폐지

다. 규제내용 개선 수단

- ① 규제대상 축소(규제대상의 규모, 유형 등에 따른 규제적용 배제)
- 기본개념
 - 규제대상의 유형, 규모, 위치, 규제 준수 정도에 따라 규제부담의 형평성과 규제 배제시의 사회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해당 규제사항의 일부 또는 전체의 적용을 배제해주는 조치
- 적용사례: 소규모 공장 사전 환경성 검토항목 최소화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요

- 각종 개발 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목적임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본 제도는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및 이념의 실현,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대안의 제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함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따른 규제 내용

1) 검토사항

(1) 종합계획의 경우

- 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유지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내용의 저촉여부
- ②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계물관리종합대책 부합여부
- ③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수질·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 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 ④ 환경적 측면에서의 국토이용기본이념 적합 여부
-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표·내용 및 입지규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규제 저촉여부

(2) 개발 계획 및 개발 사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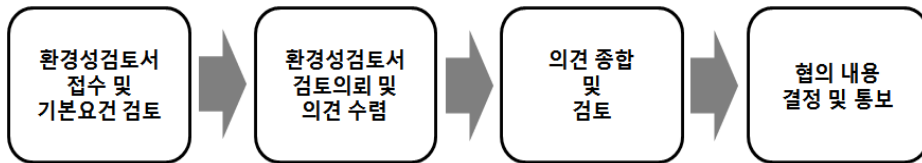
- ①~⑤ : 종합계획 준용
- ⑥ 각 개별법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 저촉여부
- ⑦ 당해 개발계획(사업)의 입지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입지관련 증점검토 사항

- ①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수질·대기·소음 등) 가능성 여부
- ② 개별법령, 고시, 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저촉여부
- ③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 ④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 ⑤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정도
- ⑥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주거기능과 생산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
- ⑦ 환경오염 요인의 공간적 차단 가능 여부(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등)
- ⑧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 ⑨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 ⑩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3. 사전환경성검토 규제 절차

<그림 5-5> 사전환경성검토 규제 절차



4. 규제절차 간소화 내용

1) 간소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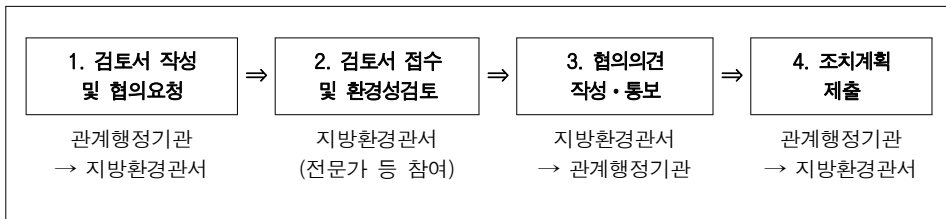
-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조성하는 5천㎡이상 1만㎡미만 소규모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함) 작성을 간소화하고 협의방법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2) 적용지역 및 대상

-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이 동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
-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20 제1호 차 목의 공장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천㎡이상 1만㎡ 미만의 공장 - 이미 운영 중인 공장에 연접하여 추가 조성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 제2호 비고6 및 비고7의 규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1만㎡ 미만 공장 포함

3)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협의절차 간소화 내용

<그림 5-6>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1) 검토서 작성 및 협의요청

- 검토서 작성
 - 작성 체계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준수
 - 검토 항목 : 지형, 자연생태(동·식물상), 대기, 소음·진동, 악취, 수질
 - * 소규모 특성을 감안, 20개 항목 중 6개항목만 중점검토
- 협의 요청
 - ‘사전환경성검토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승인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서(체크리스트 등) 내용 확인 후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2) 검토서 접수 및 환경성 검토

- 검토서 접수
 - (기본요건 검토) 관계법률 등에 따른 행위제한 저촉여부, 협의근거 및 협의절차 등 기본요건 적합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자문위원 검토의뢰) 환경영향이 중대하여 자문위원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검토의뢰
 - (현장조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계전문가 등 합동(3-5인 내외)으로 현장조사 실시
 - (보완요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장에게 보완요청

(3) 협의의견 작성·통보

- 협의의견 방향 결정
 -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급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협의의견 방향 결정
- 협의의견 작성
 - 협의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방법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 협의의견 통보
 - (협의기간) 검토서 접수일로부터 법정기간(20일) 내 협의의견 통보(근무일 기준)

(4) 조치계획 제출

- 협의기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공장허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승인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에 의거 작성,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통보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규모에 따른 규제적용 배제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부담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시 연접개발 규제 합리화	연접개발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강변여과수 시설 주변 공장입지 제한 합리화	시설 주변의 공장 입지제한 거리와 차등화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5천㎡ 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소규모 공장설립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면제	관리지역내 부지면적 5천㎡ 미만 공장설립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면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화	사업장의 규모,업종, 재해율, 근로자 안전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감독대상 선정기준을 마련
	1억 미만 소규모 공사 설계내역서 변경 허용	1억 미만 소규모 공사도 산출내역서를 계약서류에 포함시켜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소규모 공사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면제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심의사에는 제출서류 및 심의방법을 간소화 하도록 개선
	소규모 건축물의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시점 개선	공사기간이 단기간 소요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 시설부담금 납부기일을 사용승인신청일로 개선
	단독정화조 방류수질기준 적용배제 범위 확대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일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배제
	사업장내 개별 배출시설의 TMS 부착기준 개선	한 사업장내에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개별 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이 200m3미만이 되는 경우 TMS부착 면제
	제주지역 골프장 임야면적 기준 완화	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이내 제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별도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공장설립에 대한 환경,재해 규제의 합리화	사전환경성 검토는 5천㎡ ~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해 존치하되 검토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감축
	15㎡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의 면제	15㎡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최소화	5천㎡이상 1만㎡미만 소규모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함) 작성을 간소화
	보험가입 의무	규모별 보험가입 의무규제 적용 배제가능 -현재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만 배제 -체육시설업자는 보험가입증명서류 제출->보험회사가 일괄처리 하도록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절차	허가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기본적으로 허가제->신고제 전환, 관계기관 사

		후협의 -특정유형 및 규모 광고물에 제한적으로 허가제 적용가능
--	--	---------------------------------------

② 규제기준 완화

○ 기본개념

- 규제가 요구하는 적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의 구비 서류나 절차적 요건이 아닌 규제가 정한 각종 요건이나 기준의 완화를 의미

○ 적용사례1: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기준 완화

<p>○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기준 중 객석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의무적으로 객석을 설치하고 있음(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여업을 할 수 없음(법 제21조) - 시설기준에 위반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법 제77조) <p>⇒①향후 신규 혹은 개보수시 객석을 갖추지 않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보건복지부)</p> <p>②또한 음식점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경우 객석이 없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p>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규제기준 완화	외국인 생활에 불편 없는 교육 및 의료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외국인 생활에 불편 없는 교육 및 의료환경 조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기준 완화	의무적인 객석설치 기준을 완화
	산업(농공)단지 입지기준 완화	임업진흥권역에 산업(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개발 계획기준 완화	도로 확보 의무비율을 현행보다 완화
	기반시설 유발계수 합리적 조정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합성수지류 저장기준의 완화	합성수지류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가연물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저장기준을 완화 적용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합리적 개선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기인증제품의 안전기준 변경시 유예기간 연장	안전기준 변경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 품목별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무의 합리적 조정	노사합의를 거쳐 수시조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옥내. 옥외 소화전의 건물내부 중복설치 의무 완화	옥외소화전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규격 확대로 대체 가능
	이동식 물류설비에 포함된 위험물 취급소의 구조기준 개선	이동식 물류설비로 인하여 방화구획이 불가능한 위험물취급소에 대하여 기준완화 적용
	분무도장 작업장의 설비기준 개선	분무도장작업장 내부의 작업상황을 관찰.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강화유리 사용가능토록 개선
	과도한 승강기 안전점검 의무의 완화	승강기의 용도, 사용빈도, 설치장소, 유지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 검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위험물운송자 관련 자격증 휴대의무 개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손쉽게 자격증을 확인하고 자격증의 휴대의무 폐지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완화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에도 누출검사 실시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완화(현행 연1회->우려기준의 50%미만시 익년도 검사 면제)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이용시간 확대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허용시간대를 일반항공기와 동일하게 적용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대상사업기준 완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항공정비사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 개선	형식한정 자격시험 폐지
	비행경력 있는 신입조종사의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을 완화	조종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 마련
	일시 수입되는 수리용 항공기 부품품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폐지	항공기 수리를 위해 재수출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품품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면제
	수출입컨테이너화물자동차의 높이 운행허가 간소화	견인차량만 높이제한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화물차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피견인자동차의 정기점검 간소화	피견인자동차도 대형화물자동차와 같이 정기점검 간소화
	컨테이너 취급 항만시설장비의 등록제도 개선	항만시설장비용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인증 된 동일 엔진이 장착된 경우 배출가스인증이 생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화장품 병행수입 제한 개선	제조증명서 비치의무를 폐지하여 화장품 병행수입을 허용
	원료의약품 통관 신고시 제출서류 요건 완화	자체적으로 발행주기를 정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인 경우에는 탄력적용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요건완화	건설사업 참가자 결격요건을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제한
	자동차보험관련 예정이익률 설정규제 폐지	예정이익률 설정제한 폐지 추진
	보험사 외화대출 한도규제 완화	보험사 외화대출한도 규제 폐지
	카드사의 의료기관과의 제휴마케팅 허용	의료비 카드결제시 무이자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비용할인 및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보험사의 연기금 수탁업무 원활화 방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탁운용 업무 수행 허용
	보험대리점(법인)의 등록요건(유자격자 4인이상 등) 완화	보험대리점(법인)의 경우 모집행위자를 4인 이상 두도록 하되 그 중 유자격자는 2인 이상 두도록 완화
	증권회사에 대해 국제 선물업 허용	자통법 제정시 모든 금융투자업을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겸영할 수 있도록 함
	유가증권 일임매매제한 규제의 완화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경우 격.수량.매매시기.종목수 등의 제한이 없이 일임매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허용	보험회사가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종에 PEF를 포함
	보험회사의 부동산 운용업무 완화	보험회사가 업무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금지 완화	현재 원칙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양도 제한 완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개정을 추진
	자산운용회사 고유재산 운용제한 완화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
	국내펀드의 해외판매를 위한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제도정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배제
	투자회사의 담보제공 허용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산범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허용
	펀드자산운용에 대한 NEGATIVE방식 규제 적용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을 폐지
	보험업 허가시 주요 출자자 관련 요건 완화	주요출자자가 금융관련 법령 및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요건에서 배제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GIFT카드 허용	역차별 해소, 혁신적 금융상품개발 촉진 등의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GIFT카드 발행을 허용
	우체국금융의 업무용 부동산 매입 허용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일정 한도를 두고 허용
	여전사의 매입가능 채권 제한규정 완화	여전법상 여전사의 매입채권 가능범위를 동종업계에서 타 금융권의 매출채권으로 확대
	PEF의 Off-Shore SPC허용	PEF의 Off-Shore SPC허용
	펀드의 외국증권사 발행 ELW.ELS등의 투자 허용	펀드의 투자대상 다양화 차원에서 외국증권사가 발행한 ELW, ELS, DLS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증권회사의 파생사유영업 상대방 규제 현실화	외국의 펀드를 상대로 계약방식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
	국민연금 기금운영에서의 대안투자 제한 완화	대안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금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파생상품 투자제한을 완화
	보험회사의 동종 모자회사간 설계사 겸직금지 완화	동종 모자회사(100%자회사)간에 한해 보험설계사가 대리점형태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산간·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외국인 업무 범위 확대	거주자에 대한 여행자수표 매도를 허용하고, 외화매각 한도도 폐지
	증권회사의 헤지목적 선물환 거래범위 확대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매매와 관련한 환위험 헤지를 위한 선물환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신용파생금융거래시 신고의무 폐지	모든 신용파생금융 거래의 신고의무 폐지
	자회사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지주회사 주식취득 허용	위탁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취득을 허용
	저축은행의 취급업무 확대	수익증권 판매, 외국인 업무 중 거주자에 대한 여행자수표 및 외국통화 매각 허용
	외국인의 대입자격기준 개선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대학입학 자격 부여
	학교기업 운영금지 업종의 완화	67개 소매업종중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15종을 제외한 52종을 허용
	특수대학원(비학위 과정) 교육장소 제한 완화	최고경영자과정, 특별연구과정 등 단기교육과정의 교육장을 도심 인근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전공심화과정 등록기준 완화	전문대학 재학 중에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개선
	산업체 위탁교육시 근무경력기준 완화	전문대의 산업체 위탁교육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기준을 입학원서 작성일 기준으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완화
	시간제 등록생 학위취득기준 완화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학위취득범위를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3로 확대하고 모집기준을 완화
	대학 평생교육원전공단위 평가인정 기준 완화	대학의 평생교육원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 기준을 연간2~3개 전공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초지전용 규제완화	폐목장용지 등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의 경우 체육시설로 전용이 가능토록 허용
	산지의 원형보전 의무 기준 정비	원형보전비율 25%을 20%로 완화하도록 규정
	부대시설 설치의무완화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부대시설 설치의무 완화
	숙박시설 설치 허용 골프장 규모 완화	9홀 이상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도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무도화원 및 무도장 입지제한 기준완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교)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하는 방안 마련
	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포장 기준 개선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시설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시멘트·아스팔트 뿐만이 아니라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확인 개선	지정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확인 기준을 완화
	제과점영업의 1제조장 다점포 허용	일정거리 내에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의 공동사용을 허용
	영업범위의 현실화 등 위탁 급식영업 관련 규제 개선	위탁급식영업 범위의 현실화
	산지전용 허가시 보전산지 등의 편입면적 규제 완화	회원제 골프장의 불요준 국유림 및 공유림의 편입면적을 대중골프장 수준으로 완화
	산지전용 허가시 표고제한 완화	사업성격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개선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별 제조시설 기준의 완화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주류 관련 규제의 완화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관련 규제의 완화	엄격한 주류규격 제한의 완화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관련 규제의 완화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장소 제한 폐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관련 규제의 완화	주류 상표명 표시문자 제한 완화
	전기시설 사용전점검 신청자격 제한 규제완화	소유자로부터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개선	안전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기간 완화
	제2종 보통면허의 제1종 보통 면허로의 전환제한 완화	무사고·운전면허취소경력 요건을 완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의 건축물 면적제한 완화	청소년게임 제공업과 PC방의 건축물 면적기준 완화
	부동산중개업자의 재개설 등록시 실무교육 이수 완화	폐업 신고후 일정기간 내(1년 초과~3년 이내)에 부동산중개업 재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
	일반 음식점 설치범위 확대(골프장)	골프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음식점 추가(건설교통부)
	축산가공품의 유용성 표시기준 완화	축산가공품에 대한 일반적인 유용성표현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영양보급)및 특정성분에 의한 유용성 표현 허용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합리화	무단폐업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 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의 제공 허용
	식품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제재업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원격의료 허용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행위를 허용
	응급의료 절차 개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동의가 필요한 의료인 수 제한 규정을 1인 이상으로 완화
	한약 혼합엑스산제 제형의 다양화 허용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정제 등 모든 제형에 대해 구분없이 보험적용하여 제형의 개선 유도
	의료기기의 업그레이드 허용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신고)를 받은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에 의한 업그레이드 허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립동의자수 및 출자금의 완화

③ 구비서류 감축

○ 기본개념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피규제자가 규제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줄이거나 양식 표준화 등을 통한 구비서류의 수량적 감소

○ 적용사례1: 외국인 기술자 등 고용시 사증(비자) 발급 신청 서류 간소화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구비서류 감축 (간소화)	실시계획처리절차간소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 간소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서류의 중복제출문제가 발생하여 각단계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조치
	체인본부 소재지 변경시 제출서류 감축	소재지 변경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토록 항목 간소화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시 소방동의 절차 간소화	소방시설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증축, 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설계도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도서의 종류도 간소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등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는 제출 생략 설계도서는
	외국인 기술자 등 고용시 사증(비자) 발급 신청 서류 간소화	<p>외국인 기술자 등 고용시 사증(비자) 발급 신청 서류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업 등 일부 사증발급 시에는 고용계약서 등외에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 또한, 취재, 연구 등 일부사증의 경우 최초 사증발급시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요없이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자격변경·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에는 주무부처 長의 고용추천서를 첨부해야하는 불편을 초래 <p>⇒① 대학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추천서를 제출 생략(법무부) ② 사기업의 경우 “대기업 관리자 수준”의 직능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법무부) ③ 직종별 고용추천서 발급대상 및 발급기관을 명확히 하는 방안 마련(법무부)</p>

간소화유형	사례명	개선내용
	허가제도 개선	건축계획서, 배치도, 입면도만 제출하도록 개선
	보험대리점 등록서류 간소화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시 정관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
	선박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절차 개선	지방해양수산청간 행정정보공동 활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생략하고 선박관리계약서만 제출
	수출신고시 정정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다른 표준 증빙서류로 정정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외국인 기술자 등 고용시 사증(비자)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대학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
	외국인 기술자 등 고용시 사증(비자)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사기업의 경우 "대기업 관리자 수준"의 직능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
	중국인 단기상용비자 발급 절차 개선	단기상용비자 신청시 국내 초청인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유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면제
	중국인 단기상용비자 발급 절차 개선	같은 회사가 여러 번에 걸쳐 초청하는 경우 변동사항이 없는 한 한번 제출한 서류 중복제출 생략
	외국신문·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지국설치 허가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제3절 지자체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1. 단계적 규제정비 방안

-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이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 우선 과거 관행의 반복을 지양하도록 권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지시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로 법령에 없

는 과도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인·허가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를 금지토록 하고, 자체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도 요구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함

《 예 시 》

- ❖ 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관행적 징구
-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법령에 없는 건축물사용승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별도 징구
- ❖ 건축허가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지역업체 자재 활용계획서를 제출토록 권장하여 사실상 의무 부과
-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의해 확인 가능
- ❖ 보육시설 인가시 주민등록등본 등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 징구
- ❖ 공장등록 변경시 법령에 규정된 서류 이외 인감증명서 등 징구

○ 2단계 :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정비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는데도 남아 있는 규제, 조례 이외 훈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물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함

《 예 시 》

- ❖ 법령의 근거 없이 치매노인 등의 노인복지회관 사용을 제한 하는 규정
- ❖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법시행령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
- ❖ 재래시장 도로 점용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미제정
- ❖ 점용료 산정시 1월 미만 15일 초과는 1월로, 15일 미만은 1/2월로 실제 사용일보다 과다 산정한 불합리한 규제
- ❖ 복지관운영 위탁 취소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등과 같이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제

○ 3단계 : 점진적 정비

- 상위 법령에 규제근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규제를 정비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하여 국무총리실과 함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협

의해 점진적으로 정비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식개선 방안

○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

- 안전행정부는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앞당겨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의 실시를 제안한 바 있음
- 이 방안에 따르면 민원처리 건별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신속하게 처리한 날짜를 누적하여 관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강화하는 것임
-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또한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 전입할 때 우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계획한 바 있음

3. 규제개선의 절차적 간소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을 위한 절차적 유형 검토

- 아래 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정비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에 관한 유형을 정리한 표임

<표 5-5> 규제개혁 간소화 유형표

간소화 유형 (대분류)	간소화 유형 (소분류)	간소화 유형별 규제 개선방안 (절차적 내용)	사례 등
규제의 폐지 및 수준	규제폐지	자발적 협약으로 대체	
	정보제공의무 폐지	불필요한 정보의무 폐지 또는 축소	
	규제적용범위 축소	피규제대상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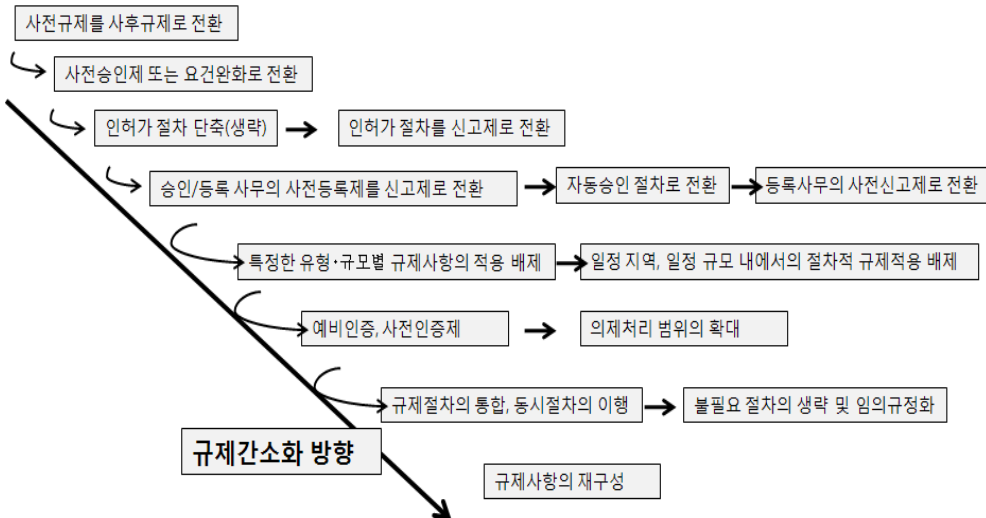
간소화 유형 (대분류)	간소화 유형 (소분류)	간소화 유형별 규제 개선방안 (절차적 내용)	사례 등
완화	규제통합	유사규제와 통합	
	규제준수도에 따른 차별감독	준수도 높은 기업 규제감독 완화, 낮은 기업 강화	규제를 잘 준수하는 집단의 정보제공의 무나 행정조사 감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신청즉시 발급원칙, 예외적 사전확인	신청즉시 발급원칙, 예외적 사전확인
		사전협의 사후신고로 전환	
		허가승인을 신고제로 전환	
	선 승인 후 절차이행	특별개발사업 사전사업승인제 신제품 등에 대한 예비인증제도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승인제	표준기간 지정 만료기간 후 자동 승인		
순응 및 집행절차 간소화	절차규제 적용 배제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특정지역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확대 지역 지정	
		유형별 차별 적용	기업유형에 따른 조사횟수 감축
		규모별 차별 적용	소규모 사업-규제절차 배제, 최소규제 적용, 요건 완화, 절차간소화
			대규모 사업-규제절차 준수위한 지원
	불필요 경유절차, 양식 생략 및 임의화	필수절차를 임의절차로 운영	
		불필요한 양식, 검사 폐지 양식간소화 통한 작성시간 감소	
		둘이상 행정기관 절차 일원화	
	의제처리 범위 확대	기 인허가의제에 대한 사전지정 의제사항 권한 기준의 총괄이양	
		유사 인허가 통합 또는 의제	
유사 중복절차 통합, 절차 동시이행	개발사업절차의 간소화		
	사업승인, 지정절차 동시 시행 중복신고 일원화		
	중복검사 간소화		
	유사절차, 중복절차 통합		
정보제공 및 데이터 공유	부처간, 부서간 데이터 공유		
	표준기준 적용		
	ICT system 구축	인터넷통한 직접 정보교환 부처, 부서간 합동 웹포털활용한 e-일괄 처리시스템 구축	부처, 부서간 합동 웹포털활용한 e-일괄 처리시스템 구축
규제 통합	관련된 규제, 하위규정 등의 통합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간소화 유형 (대분류)	간소화 유형 (소분류)	간소화 유형별 규제 개선방안 (절차적 내용)	사례 등
		절차 간소화, 단순화, 기간단축 → 한 법령 내에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여러 조항으로 나누어진 경우 통합 단순화 → 규제내용이 동일, 유사한 것의 통합	행위제한 규제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과 건폐율 제한, 용적율 제한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 등의 통합 대형유통점 허가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를 통합운 영하면 시기 단축
	요건 및 기준 사전설정 에 대한 완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의 사전설정 → 민원신청 → 행정처분	
	행정의무 이행(사후 조치) 확보를 위한 사후조치의 자동화 (객관화) 절차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의무부과 사항에 대한 완화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고용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등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고시 명확화 및 자율검토 절차화 → 민원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자동화된 ‘의무부과 고지사항’을 체크한 뒤 →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자동승인 되도록 절차화 → 사전절차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민원인에게 통지 후 자동적으로 승인 철회	
	미근거 규제사항 자동폐지	사전 규제근거 법령과 조항에 대한 명기(공개) → 법령 등의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규제사항(고시, 지침, 지시 등 법령 미근거 규제)에 대해서는 자동폐지 하도록 함	→ 유사행정규제의 불합리한 사항 정비를 동시에 추진
	사전절차 규제사항 중 유사한 규제간 통합	의무부과 사항의 사전완수 후에는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절차개선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6조)를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사전납부제(농지법 제40조)는 허가조건에 포함되도록 하고 폐지 후 통합

간소화 유형 (대분류)	간소화 유형 (소분류)	간소화 유형별 규제 개선방안 (절차적 내용)	사례 등
		경우 자동 승인되도록 절차개선	
	부담금 감면	인허가의 절차를 통합 조정하여 간소화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면 행정비용 등의 절약 효과 도출	

○ 규제개혁 간소화 유형에 따른 간소화 단계(Process)

<그림 5-7> 규제개혁 간소화 단계





제6장

결론: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정책 제언

1.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 의한 기본 추진방향

-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
 - 규제개혁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 제고
 -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규제정비 수단의 적극적 활용 유도
- 규제개혁의 수혜자인 지역주민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한 「규제신고센터」의 인터넷 등 홍보수단을 다변화하여 규제신고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개선)위원회」에 민간인위원 위촉비율을 50~80% 이상으로 개선하여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정비대상 규제사무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함
- 경제적 규제 등 우선적 정비대상의 추진 및 잔존규제의 정비
- 향후 자치단체별 규제사무의 정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잔존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되,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환경·식품·안전 등의 「사회적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대안을 개발·강구하도록 함
-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기회 등 확대
- 또한 규제개혁 성과를 가시화, 조기에 확산·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연찬을 확대 실시하여 규제개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관련협회·단체 등 직능별 계통홍보와 함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대민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는 정책 필요
 - 또 규제정비 및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의 강화 정책도 병행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방향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 신속한 규제동향 파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실시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광역 중심)간 실시간 연계체계화 작업이 필요함

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

○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개선 추진

-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투자활력 제고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의 발굴 개선
- 규제개선 과제를 위한 관리카드 DB화 및 처리과정상의 지속적 추적 관리 체계 구축. 예를 들면, 중앙부처가 수용하지 못하는 과제 중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안행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 가동이 필요

나. 규제개혁 T/F 구성·운영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 규제개혁 T/F 운영

- 시민 불편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체계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도화 필요
- 실과 국의 주무과장 중심으로 합동회의, 팀별회의 추진
- 활동은 주로 현장방문, 면담, 유관기관과 관련단체로부터의 건의사항 수렴 등

○ 시민참여 확대

- 시민에게 규제개혁과 관련한 우수 제안제도 등을 시행하여 생활불편 사항의 신고, 기업·투자환경을 제한하는 행정절차 신고 등을 유도

다. 규제개혁 실효성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체계화 및 제도운영
 - 현장 방문시스템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 경제단체, 기업인과 정례 간담회 개최, 기업체 현장에 방문하여 애로사항 수렴(월 1회, 주 1회)
 -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규제개혁 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 「규제개혁처리 통합위원회」 설치·운영
 -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이를 위한 네트워크 또는 중앙부처 수준에서의 합동부서 운영체제를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치법규 수준에 관련된 규제사항은 행정부서 내부에서 적극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령 수준에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규제개혁처리 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중요규제의 DB화로 지속관리(관리카드 운영)
 - 그리하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DB화를 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국무총리, 대통령에게 결과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 통보하여 더 이상 행정규제 때문에 불합리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함
-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 강화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 분야별 수요자 단체와 설명회, 간담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기타 광고 등

라.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

- 자치법규 수준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재정비
 - － 「표준규제 사무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전수조사 후
 - －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별 소관규제를 재검토하여 미등록 규제는 등록조치 하고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된 것은 삭제하여 정비
 - － 미등록 규제 중 폐지·완화와 같이 정비가 필요한 규제는 정비, 유사 및 중복규제도 통폐합하여 정비
- 지방자치단체간 규제사항 비교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규제의 품질 제고
 - －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시도, 시군구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과도한 규제 또는 과소한 규제를 찾아내어, 규제품질 제고를 통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함
- 자치법규상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체계 유지
 -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규제생산을 억제하도록 함. 이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 대면심사를 지향하고,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발굴 및 정비작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 － 자치법규상 규제에 대해서는 DB화, 관리카드화 하여 체계적으로 규제를 관리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규제일몰제를 전분야에 확대·적용
 - － 규제일몰제를 전분야에 확대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 － 예를 들면, 규제 신설 및 강화시에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로 DB화하여 관리

3. 규제개혁의 추진역량 강화

- 공동활용이 가능한 규제정보 시스템 구축
 -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간 규제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심사,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관리, 규제등록 등을 사안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상호간 규제변동 사항 및 규제등록 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 활용
 - 자치단체 개별적이 아닌 공동협력으로 규제개혁과제의 개요, 추진실적, 기타 규제사항 점검 및 정비실적 관리 등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연결
- 규제개혁에 관한 교육의 확대, 내실화
 - 현장체험, 실무와 사례 중심의 교육내실화를 유도
 - 규제개혁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발간하여 주기적으로 규제개념, 분류 및 등록기준과 체계화, 운영방안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함

4.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 전략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규제집행과 규제개혁 과제의 내용들이 이행되고 집행되는지 등 개혁내용의 전달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총체적인 현황을 고려해서 규제개혁을 위한 몇 가지 선진화 전략을 사례분석을 토대로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함

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의 확대

- 규제전달체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통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등의 과제들이 결정되어 지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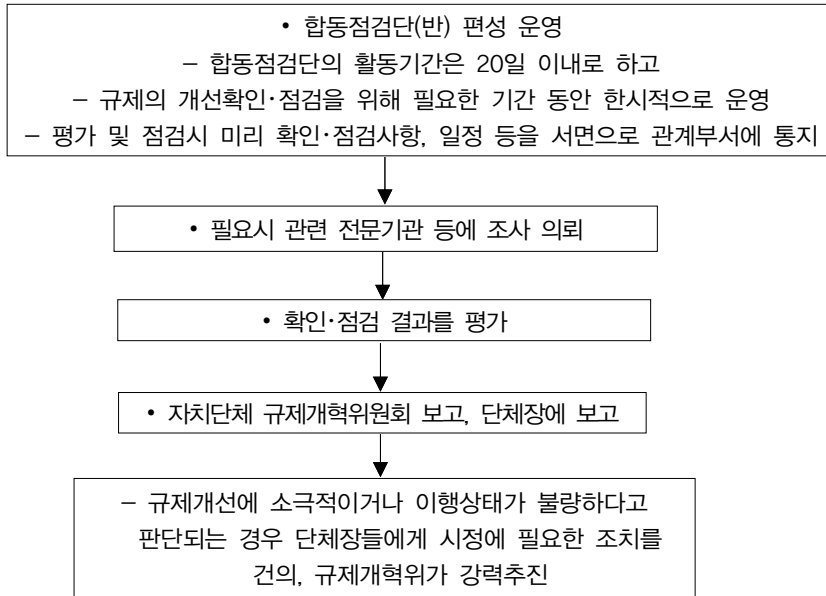
치단체에 시달될 때에는 그 결정과정이 일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의사소통 통로의 다양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

- 예를 들면, 규제개혁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공문이 대부분 규제개혁 공포시점으로부터 하루 이틀 전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검토가 어렵거나 결과적으로 중앙의 규제개혁 의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규제순응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수준에서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과정을 필수적으로 두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쌍방향적 참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 심의와 판단 등 필요한 현장에서 규제개혁안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나.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 규제의 신설·강화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
 - 자치법령 제·개정안 입법 예고 시, 규제의 신설, 강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주민참여 방법의 하나로 규제개선 평가시 협력
 - 규제개선 및 규제개혁 후 그 이행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평가방법과 점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소속 위원과 규제담당 직원, 민간(시민) 이해관계자 대표(단체) 등이 합동점검단과 같은 임시기구를 편성·운영하여 규제개혁의 전·후 단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1> 시민참여에 의한 규제개선 점검·평가 체계도



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규제심사 관련절차의 강화

○ 규제 심사 절차 및 권한 강화

- 조례·규칙의 법제화 행정 절차에서 규제심사 절차 의무화를 규정하고, 조례·규칙에 대한 사전심사시 규제심사 절차를 함께 거치도록 함
- 이는 1차 규제심사를 통해서 규제 신설과 강화를 억제하고, 중요 규제의 변동 사항과 억제 의견의 미반영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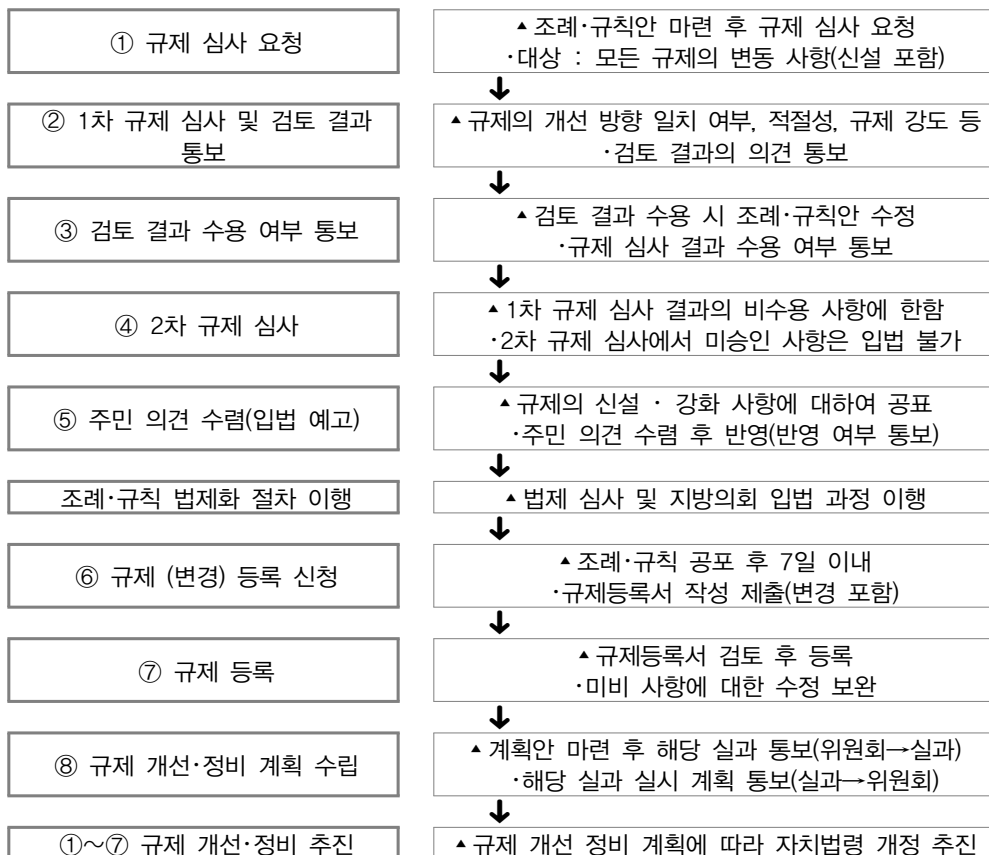
○ 규제심사 대상 확대와 2단계 심사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

- 1차 규제심사(실무 심사) : 모든 규제에 대한 변동 사항 심사 후 규제 신설, 강화 등의 억제
- 2차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중요 규제의 변동 사항과 1차 심사 의견 미반영 사안 심사
- 그리고 2차 규제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안에 반영토록 의무규정화

○ 자치단체 조례제정시 규제일몰제 개별 적용

-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항을 조례로 제정·시행할 경우 자치단체 수준에서 4년 기준의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함
- 특별법 위임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 기간 4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2~3년을 적용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함
- 이러한 규제심사의 강화 및 일몰제 도입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등록·관리·심사 체계를 변화하도록 함 (아래 그림 참조)

<그림 6-2> 규제등록관리 및 심사 체계도(안)



라. 분산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쌍방향적 관리운영체제 구축

- 현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정보는 분산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통합된 전달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함
- 현재 각 규제개혁 추진주체는 별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규제관련 정보를 분산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종합적으로 규제개혁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통합적인 정보전달 매체를 구축함으로써 피규제자인 주민과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규제집행자들까지 정보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중요함
-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규제개혁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되도록 하고, 정보접근과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각 중앙행정기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자 등도 함께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 감사원(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 특정과제감사보고서.
- 강창현(2006).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조정,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18(2) : 561-585.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회의(2008) 「공무원의 행태인식 개선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 새 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보고자료.
- 국무조정실(201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주요개선 사례집
- 국무총리실(2008). 「새 정부 6개월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혁 추진현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보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0), 행정규칙개서 사례집.
-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김정해, 이종한 외(2008), 규제 전달체계의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2008,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박영도(2013),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처(2012),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2012.
-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규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2013. 10.
- 안전행정부(2014), 지자체 행태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례정리, 2014. 4~5.
- 안전행정부(2014), 지자체 행태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례정리, 2014. 6.
- 안전행정부(2014), 지자체 행태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례정리, 2014. 6.
- 이종한 외(2009), 규제개념 재정립 및 규제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Hampton, Philip(2005).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 Jacobs, Scott(2007). Regulatory Reform Strategies: Converging with Europe's Best

-
- Regulatory Environments. Jacobs & Associates International Leaders in Regulatory Reform.(September)
- OECD(2005).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olicies in OECD Countries: Preliminary Survey Results. Paris.
- OECD(2006). Cutting Red Tape National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 OECD(2006). Cutting Red Tape: National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Paris: OECD.
- OECD(2007). Cutting Red Tap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the Netherlands. Paris: OECD.
- OECD(2007). Risk and Regulation: Progress Report on the Stocktake of Country Responses and the Development of Case Studies. Paris: OECD.